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문제

I. 서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비장애인들이 장애라는 현상 자체에 대하여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또 사회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진정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또 이것이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통로일 것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비장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편견을 바로 잡고 나아가 사회의 전체 구성원간에 화합을 도모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기본욕구인 자기실현을 위해 균등한 기회의 제공과 최저 생계의 유지를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기회의 균등권, 생존권, 교육권, 근로권, 참정권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도 이와 같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그러기에 장애인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소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인간다운 삶의 욕구를 가지고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려면 자립능력 배양과 사회적응을 위한 편의도모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장애인관을 정립해 나가는 일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장애인을 흔히 우리 주변의 불우

이웃 정도로 생각하여 동정과 구호의 대상이나 의지와 도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들에 대한 관념은 사회적인 짐 또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고 자립할 수 없게 되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장애에 대해서도 그가 속한 사회와 국가의 책무성(accountability)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빈곤이나 장애와 같은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애의 책임을 사회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남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다. 이는 장애의 책임을 부담으로 의식하는 데서 기인되는 것이라 하겠다. 부담의식은 짐이 되어 벗어버리고 싶거나 피하고 싶은 소극적인 생각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장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적극적 사고와 구체적 발상을 통해서 스스로 짐을 벗어 나가는 능력을 키워주고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주고 편의시설이나 설비를 통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보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장애의 책임을 개인이 감내하게 되고 나아가서 사회적, 국가적인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의 재활욕구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나 사회 국가적인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재활의욕이 여러 여건으로 인해 좌절되고 있다면 이는 곧 사회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 복지는 사회와 국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사회의 어느 구석에 그들이 있는 한 그 사회 전체는 결코 밝고 명랑해질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그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복지

국가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청소년에 대한 비장애 청소년의 바른 이해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계몽·지도 자료 차원의 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에 앞서 기초연구의 성격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비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정부의 각종 장애인 정책,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시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외국의 각종 정책관련 자료나 장애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2) 전문가 토론회

장애인관련 단체와 학교, 그리고 수련시설 등지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관련 전문가 및 교수,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중심 논제를 가지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여기서 도출된 의견을 연구보고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3) 전문가 면담

정부의 장애인 관련 행정부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이다. 장애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해 관련 행정부의 장애인 담당 공무원을 만나 직접면접을 하고, 학교나 단체 및 기관의 장애인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연구문제

여기에 제시되는 주요 연구문제는 본 연구의 주목적인 장애인 이해와 사회통합, 그리고 장애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들의 교육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들이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의 과학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에 바탕을 둔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정당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의 사회통합 운동 및 연구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셋째,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중 교육, 가족지원, 직업훈련이나 재활, 그리고 수련활동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가?

넷째, 궁극적으로 장애청소년을 바로 이해하고 이들을 사회의 주류속으로 완전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해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필요성과 그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그리고 이해교육 프로그램에 담겨져야 할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장애인과 사회통합
3. 선행연구 고찰

II. 이론적 배경

장애란 무엇이며 장애청소년은 어떠한 청소년들을 의미하는가? 장애 청소년은 다른 말로 특수청소년(*exceptional youth*)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특성이나 학업특성, 감각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행동, 그리고 신체적 특성 등에서 주로 평균 혹은 일반청소년들과 차이가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장애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측면의 결함으로 인해 일상적 사회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데 스스로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겪게 될 뿐이지 남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가 있는 것 외에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다. 따라서 이들도 하나의 엄연한 인격체로 인정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장애의 본질에 대한 이론이나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일반 비장애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장애 자체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장애의 이해는 곧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1. 장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장애의 개념 정의

사람들은 처음에 ‘장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흔히 신체적 측면에서의 장애만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장애에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

적 사고와 행동이 어려운 경우도 모두 장애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 그러한 일반적 정의에는 정신적 특성이나 감각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행동 특성, 신체적 특성 등이 일반인의 평균에서 벗어난 경우를 일컫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장애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세 가지 개념은 손상이라는 말과 불능, 그리고 장애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구본권 외, 1997).

손상(*impairment*)이란 용어는 인간 개체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결함이 생긴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시각손상은 시각조직이나 눈의 어떤 부위에 결함이 생긴 것을 나타내는 말이고 색맹이나 시야의 제한 등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불능(*disability*)은 불구라고도 할 수 있는 말로써, 손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학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몸의 일부 또는 기능의 일부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이상이 생겨서 재생불능으로 판단되면 이것을 불능이라 한다. 예를 들면, 시각 손상으로 인해서 개인의 어떤 활동능력에 객관적인 제한을 초래하는 것을 불능이라 할 수 있는데, 색맹인 운전기사나 전기기사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시각불능이 반드시 시각장애는 아니다.

장애(*handicap*)는 손상이나 불능으로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분야에서 개인이 불리하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손상이나 불능은 개인적인 것이나 장애는 사회적인 것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개인에게 존재하지만 장애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전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의 장애인이 그러하듯이 부분적으로 장애를 겪게 되거나 장애를 지닌 청소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장애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일반 비장애청소년에 비해 부분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영역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기타 능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일반 비장애인과의 공통점이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 장애유형별 정의

① 시각장애

시각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각장애라 하는데, 기능적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능력이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일컫는 것이다.

② 청각장애

청각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경우를 청각장애라 한다.

③ 지체부자유

손이나 팔, 다리 등과 같은 신체 한 부분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경우와 심각한 질환이나 의료적으로 이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지체부자유라 한다.

④ 정신지체

지적 능력과 적응행동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경우 정신지체라 한다.

⑤ 학습장애

듣기나 말하기, 읽기, 쓰기, 추론하기, 그리고 셈하기 기술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경우를 학습장애라 하는데, 학습장애는 특수교육 영역에서는 가장 큰 범주로 전체 장애영역의 절반 정도가 학습장애로 여겨진다.

⑥ 정서장애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기술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 특별한 교육적 요

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정서장애라 한다.

⑦ 언어장애

언어와 의사소통 기술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언어장애라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의사소통장애라 하기도 한다.

⑧ 중복장애

두 가지 이상의 장애와 관련된 기술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중복장애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각 장애유형에 대한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을 실제적으로 장애인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장애로 인해 요구되는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학생 교육에 관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증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그리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등이다.

장애인복지법보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의 영역을 더 넓게 포함시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분명하게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장애의 영역을 보다 확대시켜 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당뇨병까지도,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심지어 호흡기나 방광, 직장 등과 같이 내부 장기

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까지 장애로 규정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날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특수교육의 대상을 규정할 때 특정한 장애범주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범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하다. 미국 각 주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범주의 내용 범위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래에 기술하는 장애범주를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실제 생활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잠재성 장애인들까지 모두 장애인의 범주 속으로 포함시켜 장애인 교육이나 복지 서비스 체계 내에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일은 결코 소외되어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2) 장애청소년 출현율

장애청소년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장애청소년 출현율 문제는 장애에 대한 정의의 변화와 애매성, 진단기준의 변화와 중복성, 표집의 오류, 그리고 명칭붙임(*labeling*)의 기피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우나 우리나라에는 전체 청소년의 3.18%인 약 39만 5천 여명 정도의 장애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박영균 외, 1999).

참고로 미국 교육성에서 의회에 보고한 장애종별 출현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권요한 외, 1999). 미국에서는 매년 0세부터 21세까지의 장애인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령대의 장애인은 7.8%로 추정되어 그 수는 대략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 미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 학생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표 II-1> 장애영역별 출현율

장애영역	출현율(%)	장애영역 내 비율	참 고
시각장애	0.04	0.5	
청각장애	0.11	1.4	
농·맹	0.01	0.1	최대치 적용
정신지체	0.96	12.3	
정서장애	0.69	8.9	
학습장애	3.90	49.9	
언어장애	1.73	22.3	
중복장애	0.17	2.2	
지체부자유	0.09	1.1	
병 허 약	0.10	1.3	
계	7.80	100.0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혹은 장애인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던 'the disabled', 'the handicapped children' 등의 일반적 용어는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에서는 대체로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children with low abilities' 등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는 한 개인이 가지게 된 어떤 장애로 말미암아 전인(全人)을 장애인이라고 간주했던 보편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어 신체의 일부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은 여전히 한 인간 자체로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장애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기준이 있으며 확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중도·중복장애 등으로 나누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영재아도 특수아동의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용어 하나에 있어서도 장애에 중점을 두고 정의했던 과거의 용어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 자체보다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그런 용어로 개편해 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내외의 일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differently abled people*'이라는 용어를 이 시점에서 한번 깊이 고려해 봄직하다.

(3) 장애발생의 원인

장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기별로 분류하면 출생전, 출생중, 출생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임신중의 산모의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는 태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산모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및 정서적 상태도 태아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조기 흡연, 음주, 문란한 성생활, 사회경제적 및 심리적으로 열악한 생활 환경 등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장애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데에 심각성이 뒤따른다. 분명한 원인을 알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장애를 유발시키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 자체를 정신적·심리적·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원인들을 장애발생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11-2> 장애를 유발시키는 원인들

발생시기	발 생 원 인
출생전	□ 감염과 중독 : 풍진, 매독, 톡소플라즈마, 박테리아 감염, 바이러스 감염, 약물중독, 독물, 담배, 카페인, 알콜, 납중독 □ 염색체 이상 : 다움중후군, 클라인펠터중후군, X염색체 이상 등 □ 선천적 대사장애 : 아미노산장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장애, 성장호소장애, 핵산장애, 페닐케톤뇨증, 윌슨병 등 □ 뇌형성발달장애 및 뇌손상 : 뇌형성 결손, 세포이동결손, 신경내결손, 일차성소두증, 뇌손상, 뇌기능장애 등 □ 환경의 나쁜 영향 : 자궁내 영양실조, 약물남용, 모성질환, 임신중 방사선 노출 □ 원인불명 : 무뇌증, 소두증, 수두증, 아페르중후군, 수막척수낭류, 협두증, 신경피부중후군, 변성질환 특수형 등 □ 기타 : 생화학적 이상, 신경심리학적(시·청각적 지각 이상, 발음기관 손상, 정보처리 이상, 기억 문제 등) 이상, 유전적 요인, 임신중독증
출생중	□ 외상 또는 신체적 원인 : 저산소증, 외상, 조산, 난산, 만산, 체중과다, 방사선 조사, 자궁내 장애(모성당뇨, 모성빈혈, 모성고혈압, 급·만성태반부전증), 신생아장애, 감염, 호흡장애, 두 개강내출혈, 신생아패혈증, 영양장애, 기계적 손상에 의한 뇌장애 등
출생후	□ 뇌질환 : 신경섬유종증, 결정성뇌경화증, 스테지-웨버병, 헌팅턴무도병, 중이염, 척추와 뇌손상, 뇌성마비, 임균성 결막염, 드라코마, 중양,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감염 등 □ 환경적 요인 : 심리사회적 실조, 감각기관 상실,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실조(가난), 학대, 가족 갈등, 학교생활의 실패, 사회환경적 요인 등 □ 감염, 열병, 발작 : 곰팡이 감염, 기생충 감염, 뇌막염, 뇌염, 기타 열병, 경련, 근경련, 간질 등 □ 기타 사고 : 교통사고, 심장마비, 외상성 뇌손상, 정서적 문제

2. 장애인과 사회통합

전통적인 우리 사회는 서로 돕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발달되었다. 계, 품앗이 등의 미풍양속은 지금까지도 일부 농촌지역에 남아 있다. 그런데 산업사회는 우리의 좋은 전통을 한꺼번에 단절시켰다. 이제 우리 사회는 완전 경쟁 사회가 되어 버렸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여 벼랑끝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물리적인 환경에서조차도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이 없는 경우 또한 사실상 사회 속에서 격리된 삶을 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의 격리가 정당화된다면 그 사회는 최악의 인권침해 현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가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국제기구는 장애인의 인권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생존의 조건이기도 하다는 이런 의미에서 특히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낙인론(*labelling*)이 우리 사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회적인 낙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치료와 보호라는 미명 하에 장애인들을 '문제집단'이나 '문제를 가진 개인'으로 낙인찍어 결과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이 거의 반영구적인 보호

대상자로, 또한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시켜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영위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들이 아무리 사회통합을 원한다고 할 지라도 '일반사회'의 배제(exclusion)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외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통합을 희망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사회에서 정상적인 성원으로 용납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장애인들은 사회로 접근하지 못하고 자연히 격리(segregation)된 생활환경을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합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통합을 거부하는 일반 사회와의 관계는 하나의 지속적인 갈등관계로 밖에 표현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방어력이 없고 힘도 없는 장애인이라는 격리집단은 힘있는 다수인 비장애인 집단에 의하여 계속해서 격리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반 부정적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하는 일과 장애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높이는 것이다.

통합이란 장애인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가치있는 방법으로 인격적 개인으로서 성공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과 참여이다. 통합은 개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단순한 참여가 아닌 가치있는 참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없이 사회로 사람만 밀어 넣는 것은 통합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다. 사람만 밀어 넣는다는 것은 투매(dumping)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애인 사회통합이 가능하려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장애청소년의 사회통합이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반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장애

인이 사회통합을 통하여 시민적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 사회 안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신분을 인정받아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김형식, 1998). 따라서 장애청소년의 사회통합은 장애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만 가능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1975년 제3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 권리'의 아홉 번째 권리로 '장애인은 그 가족이나 또는 양친과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창조적 활동·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은 그 거주에 관하는 한에서 그 상태로 인하여 필요하던가 또는 그 상태에 유래해서 개선하게 될 경우 이외에는 차별적인 취급을 면한다. 만일 장애인이 전문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할 때에도 그곳에서의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동년배의 사람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한 것이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한 것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기초로 UN은 1981년에 세계장애인의 날을 선포하면서 장애인의 경우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이 가능해야 인권이 보장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기회에 있어서는 물론 결과에 있어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다.

1980년대 초에 들어와 UN에서는 '세계장애인의 해 10년(UN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83~1992)'을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소개한 세계장애인의 해의 표어인 완전참여와 평등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세계장애인의 해 10년'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있다는 평가 속에 아직도 아·태 지역에 속한 많은 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현실이 별로 진전된 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태 지역 장애인의 해 10년'을 선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2가지 행동계획을 선언했다. 열 두 가지 행동계획에 '사회통합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인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행

동강령은 통합교육의 이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공식, 비공식 프로그램에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여성장애인과 장애여아의 문맹퇴치 및 교육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수혜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및 주·지방 정부 예산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지닌 아동과 성인이 교육체계에 참여, 주류화하도록 지원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그 실행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도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는 '①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책상 및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98년에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에 나타난 아홉 번째 권리로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의 평등은 타 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평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에만 정당화되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인의 권리는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에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소비자로 인식

장애인을 단순히 사회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재활의 소비자(*consumer*)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장애인 복지제도나 지원이 다분히 자선적 혹은 시혜적 입장에서 시행되어 왔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을 그저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자 정도로 가볍게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기 권익을 스스로 보호받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베풀어주는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마땅한 권리로서 받는 복지, 다시 말해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말은 장애인이 자신의 재활에 필요한 시설입소나 각종 재활 프로그램이나 혹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Albrecht, 1992).

적어도 장애인 지도자들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재활·복지 사업과 프로그램 참여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식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각 장애인도 한 인격체로 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적·경제적 권리의 완전확보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복지국가에서의 장애인 권익운동의 핵심은 독립생활 이념이다. 즉,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에서 독립생활로 그 철학적 기저가 변화되고 있다(Szymanski & Parker, 1993).

장애인의 독립생활 이념에 포함되는 것은 탈시설화·탈병원화와 함께 지역사회중심 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의 주역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독립생

활운동의 이념에는 장애인도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완전히 확보할 때 사회통합은 가능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Albrecht, 1992). 특히 장애인지도자들이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 권리와 힘을 가지는 것은 지역 사회 장애인복지를 통하여 근본적인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고 명실공히 장애인도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3) 장애인 지도자의 역량 강화

장애인 지도자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다.

첫째,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스스로 자기결정권과 의존권을 가지되 이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인식을 장애인 지도자부터 가져야 하며 전문지식을 겸비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 장애인 지도자의 연수나 훈련 그리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지도자는 적어도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보는 예견적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첨단 정보화사회의 본격화 ▲지구촌시대의 심화 ▲시민사회의 대두 ▲노령화사회의 도래로 앞으로 복지욕구도 더욱 증대된다는 전망을 하고 이에 대한 지역 장애인복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은 때로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한 사람의 말보다는 다수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것의 파괴력과 해결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조직체계를 잘 육성하는 리더쉽이 필요한 것이다. 이 리더쉽에는 판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조직체계의 역동성도 포함된다.

그래서 집단적·조직체계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강력한 권익집단으로 세력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한 정신지체인의 어머니가 클린턴 행정부의 특수교육과 재활의 책임자로 있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가까

운 학교에서 입학거부를 당하자 고소를 하면서 전국적인 장애인부모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면서 권익집단으로 육성시켰던 것은 좋은 사례라 하겠다.

3. 선행연구 고찰

장애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과 함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다. 늦게나마 정부에서 장애청소년에 대한 재활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따름으로서 한국은 명실상부 21세기에 가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이들 장애청소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한없이 많다. 가까이 있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되찾아 주는 일에서부터 멀리는 장애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일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 시작된 장애청소년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중단 없이 계속해 가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기관, 단체,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참여의식이 요구된다.

1) 장애인 이해 및 사회통합의 노력

(1) 장애장벽 제거운동의 전개

장애장벽 제거운동(*Free Barrier Movement*)은 태도의 장벽과 의사소통의 장벽, 그리고 건축물의 장벽 등 크게 세 부분의 장벽을 허물어 나가자는 사회운동이다. 이 장애장벽 제거운동은 미국에서 장애인 사회통합의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이 운동을 처음 주창하고 강력히 전개한 사람은 미국의 해롤드 윌키(*Harold H. Wilke*)이다.

1990년 7월 26일 두 팔이 없는 해롤드 윌키가 발가락으로 집어주는 펜을 당시 미국의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이 직접 건네받아 장애인법(ADA)에 서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82년 설립된 미국의 장애인전국조직(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은 미국 내의 4,000여 개에 달하는 장애인단체를 통합·조직하여 이러한 장애장벽 제거운동을 펼쳤던 것이다(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 1994).

이 운동본부에서는 비디오, 세미나, 장애체험대회 등 갖가지 홍보와 계몽을 전개했으며 종교기관까지 동원한 것이 특징이며, 민간단체가 앞서고 정부가 지원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장벽 제거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범사회적 차원의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000년도부터는 그동안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었던 미비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주택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시설주나 시설주관기관에서 앞으로 이 일을 어느 만큼 수행할지는 의문이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제거해야 할 장벽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유지나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장애장벽 제거운동을 전개하되, 장애장벽의 구체적 내용을 조사하여 제공하고 계몽하고 설득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복지인식 개혁의 전도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장애의 장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장애장벽을 하나씩 하나씩 실제적으로 차례대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큰 몫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통합은 우리 사회에서 물리적 장

애와 심리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2)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1) 캠프 뉴호프(*Camp NUHOP*)¹⁾

미국의 '따뜻하고 확실한 캠프'인 캠프 뉴호프는 학습장애, 행동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장애를 가진 6세~16세의 청소년을 위해 실시하는 여름철 합숙 프로그램이다. 65명의 캠프참가자와 2명의 직원은 참가자 7명과 상담가 3명이 한 팀이 되어 지내게 된다.

모든 청소년들은 성공의 경험으로 잘 자란다고 믿기 때문에 캠프 뉴호프의 활동은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들 각자는 생산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어야 한다. 뉴호프 캠프 참가자들은 '배우려고 노력(*try to learn*)'할 뿐 아니라 '노력하는 법(*learn to try*)'을 배운다.

캠프 뉴호프에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치료하도록 돕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캠프 직원들은 곤란한 일들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들과 바람직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긍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한다.

캠프 뉴호프에서는 본 캠프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참가자들을 비슷한 요구를 가진 적합한 그룹으로 나눈다. 구조화된 프로그램 안에서 참가자들은 그들 각자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직원과 함께 배치된다. 직원은 자기인식과 사회적 발달을 가르치며, 우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만든다.

1) 이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발행한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박영균 외, 1999)의 일부를 재인용한 것임

3) 대처전략과 가족의 안정

(Coping Strategies and Family Well-being)

미국 캔자스대학(*University of Kansas*)에 설립된 비치 가족·장애센터(*Beach Center on Families and Disability*)에서는 1988년부터 1993년에 걸쳐 학부모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안정과 가정생활의 보다 많은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적인 가족지원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실제 목적은 장애청소년 부모를 위한 인지적 대처전략의 활용 증진을 위해서이다.

센터에서 사용한 프로그램 진행의 방법은 문헌고찰, 부모집단 회합, 참여연구, 현장검증, 동료검토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부모들은 이 워크숍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특수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부모들에게 서로간에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며, ② 개별적인 대처전략과 대안적 대처방법, 그리고 일반적인 대처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

인지적 대처전략 워크숍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사후에 실시된 질문에서 이 워크숍이 그들의 대처기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배경은 스트레스 이론으로부터이다. 스트레스 이론은 ABCX 모델을 개발한 힐(Rubin Hill, 1949)이라는 학자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의 이론은 어떤 사태(A)에 대한 가족의 반응(X)은 가족의 구성원(B)과 그 사태의 중요성(C)에 대한 지각에 의해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문헌을 고찰해 본 결과 많은 정보들이 경험적 문헌이 아니라 부모의 진술과 일화적 문헌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가족내의 장애와 관련된 부차적 도전을 성공적으로 대처해 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연구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Wikler McDonald, 1986), 아직 훨씬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의 연구의 배경은 ‘장애의 도전에 대한 대처(*coping with the challenges of disability*)’라 하는 것으로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대처전략 인식 및 활용의 증진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부모들과 연구자들은 워크숍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였다. 워크숍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출현에 대한 지각과 성공적 대처 및 적응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캔자스 대학교의 가족 인식 연구 프로젝트의 발견점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경험적 문헌에서는 중재접근과 인지적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과의 집단 인터뷰는 훈련 자료와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인지적 대처전략을 부모들이 활용하는 데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된 계속적인 통계적 검증 결과는 세 가지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검증에서 밝혀진 중요한 결과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워크숍 참가자(실험집단)들에게 연구의 말미에 가서 질문지를 보냈다. 그 반응의 결과는 워크숍의 1차적 이점은 서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부모들간에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개별적 대처전략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2차적 이점이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 이 워크숍이 그들의 대처방법에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못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워크숍 참가 1년 후에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질문지에서 도출해 낸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세 곳의 연구장소 중 두 곳의 참가자들이 이 워크숍의 결과로 강력한 부모 원조 집단을 형성하였다고 보고함으로써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4) 부모 대 부모지원의 효율성

(Effectiveness of Parent to Parent Support)

미국의 캔자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몬트, 뉴햄프셔 주에서 400여명의 의뢰받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 대 부모 프로그램에 있어 장애자녀를 둔 부모와 다른 부모들간의 접촉 전후에 있어서의 부모들의 반응을 질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1993~1996년 사이에 캔자스대학의 비치 가족·장애 센터,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다트머스 대학교의 후드센터, 뉴햄프셔와 버몬트주의 부모 대 부모지원 프로그램,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가족지원 네트워크,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일대일 부모 대 부모지원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일대일 부모 대 부모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수용의식, 대처방법, 그리고 권능부여 등에 관한 부모들의 감각을 증진시켰으며, 부모들에게 부모 대 부모지원의 요구에 대한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의뢰된 부모가 지원받는 부모와 더 많이 접촉할수록 이 부모 대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배경은 부모들이 부모 대 부모지원 프로그램이 가치가 있으며 유용하다는 것을 말하지만, 부모들의 이러한 증언에 대해 아무런 학문적 배경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를 통해 부모 대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점은 부모 대 부모지원 프로그램이 부모들의 권능감과 상황 인식, 그리고 그들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감각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부모 대 부모지원 프로그램은 또한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 그

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구나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약 80% 이상의 부모들이 이 프로그램을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지원을 받는 부모가 지원하는 부모와 접촉 회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모 대 부모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Ⅲ.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고찰

1. 장애학생 통합교육 프로그램
2.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3. 직업재활 프로그램
4.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III.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고찰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요구에 잘 부합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재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우리나라에만 3.18% 정도로 추산되어 약 39만 5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니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이들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으며,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설령 장애청소년 수가 전체 청소년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 할지라도 모든 국민의 평등권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국가 정책이 수립되고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실시되는 것은 어찌면 민주 복지 사회에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소수집단을 위한 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이들과 같은 소수집단을 위한 사회·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발달되어 있으며, 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가의 책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 시민도 장애인이나 노인, 불우한 계층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 사이에 화합과 통합의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장애청소년 정책은 결국 복지국가의 목표인 사회의 통합으로 이어지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의거한 풍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각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연구된 여러 가지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

해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기의 장애인에게 교육과 직업, 가족의 지원, 그리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여러 수련활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필요한 요구이기도 하다. 여기서 다루는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애학생 통합교육 프로그램

1) 한국의 특수교육 개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해 국가가 교육과 복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일은 지극히 마땅한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육의 제도적 장치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교육하기 위해 법제화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는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수교육은 전액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즉,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비는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 교육으로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대책은 궁극적으로 이들의 자립 및 재화에 그 목적이 있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가 심화·고착되기 이전에 유연한 교육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아실현의 한 방법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분리 특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특수교육에 관한 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정책방향을 통합교육으로 설정하고 이의 적극적 추진에 앞장서고 있어 머지 않아 우리나라도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장애아동 취학현황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9). 1962년에는 10개교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특수학교 수가 1999년 4월 현재 123개교로 늘어났으며 이들 학교에는 2,479개의 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서 총 24,091명의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연도별 특수학급 현황은 1971년에 1개 학급에 불과하던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 수는 1999년 현재 3,764개가 설치되어 26,178명의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9년 현재의 특수교육 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장애별 특수학교 수는 시각장애학교가 12개교, 청각장애학교가 15개교, 정신지체학교가 73개교, 지체부자유학교가 17개교, 그리고 정서장애학교가 6개교 등이다.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현황은 학교급별에 따라 분석해 보았는데, 유치원에 설치된 특수학급이 45개 학급, 초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이 2,968개 학급, 중학교 특수학급이 700개 학급, 그리고 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이 51개 학급으로 총 3,764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특수학급의 운영유형에 따라 특수학급 현황을 분석해 보면 현재의 특수학급 운영실태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운영유형별로 보면 전일제 특수학급이 436개 학급이고, 시간제 특수학급은 3,157개 학급, 특별지도실 형태의 특수학급이 53개 학급이다. 그 외에 재택순회와 기관순회 형태의 순회학급이 118개 학급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실에서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지적해야 할 사항은 통합교육(integration)이 아니라 분리(segregation) 위주의 교육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선진복지국가에서의 통합교육은 사회의 주류(mainstream) 속으로 장애인을 합류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느 초등학교의 한 학급에 비장애학생이 20명이 있으며 그 주류 속에 한 두 명의 장애아동이 포함(inclusion)되어 공부한다는 뜻이다(Lehr & Brown, 1996).

사실 어릴 때 교육에서의 분리정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거리감과 편견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능한 한 자아개념(self-concept)이 형성되는 유아기나 아동기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친구가 되고, 장애를 경험하고, 또 때로는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통합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2) 2001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실시의 기반 구축,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등을 주요 기본방향으로 한 '2001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따라서 이 운영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을 통해 앞으로의 한국 특수교육은 그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가 수립한 2001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①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대책 홍보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시·군·구교육청(상당실), 시·도교육청(민원실)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비치하여 대상자들이 활용하도록 하였다(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특히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대상자(만 6~15세)로서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대상자를 적극 파악하여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 실태파악 철저

가정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병원 등에 있는 미취학자와 보육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기관 이용자 중 특수교육대상자를 시·군·구교육청 및 초등학교 학구별로 파악하도록 한다. 또 의무교육대상자 중 취학의무 유예자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통합교육대상자, 학습부진아 중·정신지체·학습장애·정서장애 등 특수교육대상자, 그리고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재학중인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어도 특수교육대상자 심사·선정 기준(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속하는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2001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 조사를 의뢰하였다.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철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에 있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강화한다.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하고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를 심사하도록 한다.

이러한 심사절차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 4조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에 적절히 지정·배치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각 지방교육청의 교육장이나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배치하도록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모형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일반학교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타 시·도 특수학교

↘ 순회교육 ↗

의무교육대상자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취학 조치에 관해서는 초등학교의 취학의무 유예자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유치부에 취학하는 것은 불가하며, 의무교육대상자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하여 입학 또는 재입학·편입학을 허가하는 때에는 해당 학생의 생활연령 및 학력을 평가하여 학교장이 입학 또는 재입학·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2항, 2000. 12. 현재 개정 추진 중).

학령기가 지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취학 조치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에 의거 교육감이 기준을 정하고,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였다.

배치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이나 학부모가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는 있지만(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당해 학교의 장이 직접 선정·배치할 수는 없음.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직접 취학의 지원을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지원상황을 지체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특수교육 진흥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 과령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

-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대상
 - 연령 : 만 3~17세
(단, 취학의무 유예자는 유예기간만큼 취학기간 연장)
 - 예외 :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연령제한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 가능
(단, 졸업하는 당해 연도에 진학시만 허용)
- 취학시기를 놓친 과령 특수교육대상자는 당해 연령에 맞는
학년에 배치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교 교감 회의자료, 2000.12.7)

한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있어 신청서류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 유공자 증명서를 장애인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를 개정하였다(2000. 7. 19).

④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기회 확대

장애유아의 조기 진단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였다(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제4항 규정). 또 만 3~5세의 장애유아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유아의 조기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내에 특수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도록 하며 나아가 장애유아를 일반학급에 통합·배치하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유아특수교육기관의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에 유치부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도록 하고 유치부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신·증설하도록 추진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이용시설 내에 유치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장애유아교육 담당교사 신규임용시 유아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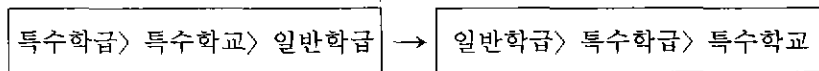
⑤ 순회교육 확대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재택·순회방문 교육을 운영한다. 그 대상은 장애인 수용시설, 장애인 이용시설(복지관), 치료기관, 가정 등에 수용되어 있는 만 3~17세 아동 중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중증장애로 인하여 학교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된 아동이다.

순회교육의 교육방법은 특수교사가 각 시설이나 치료기관, 가정 등을 순회방문하면서 교육하거나 재적학교의 일정한 계획에 의한 등교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를 위해 각급 교육청은 순회교육 담당교사 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는 있으나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유·초·중학교에 순회교육 담당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2) 통합교육 실시의 기반 구축

①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체계의 전환



② 특수학교 교육체제의 전환

가정·병원·시설 등의 중증·중복장애학생을 우선적으로 취학시키고 향후 중증·중복장애학생 중심의 전 장애영역을 망라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도록 한다.

특수학교 재학생 중 약시학생이나 난청학생, 경도장애학생 등은 가능한 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역사회가 이들 장애학생의 직업교육과 치료교육, 교육상담 등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해 나가도록 확대한다.

또한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단기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의 기숙사 등을 활용하여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생활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수학교와 인근 일반학교를 연계한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관내의 특수학교와 인근 일반학교를 과정별로 지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통합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통합교육의 지속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교육 실천사례에 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③ 특수학급 운영체제의 전환

가능한 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반학급 배치를 확대해 나간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연차적으로 전원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하도록 한다. 특수학급 운영형태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전일제나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일반학급에서의 통합교육 강화

각급 학교는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적절한 교육을 위하여 통합교육 담당교사(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연수를 강화하며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4인 이하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교는 특수교육 전공교사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⑤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확충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제2항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장애학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재나 교구, 경사로, 손잡이, 화장실, 책상, 의자 등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확대

시·도 및 지역교육청별로 1개교 이상의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시·도별 예선을 통해 우수학교 1개교씩을 추천하여 통합교육 우수 시범학교 사례발표대회를 2001년 12월초(예정)에 개최하도록 한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급은 학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하도록 한다.

특수학급의 시간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일반학급 교사와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사, 특수학교와 일반학급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급의 교사는 특수교육 일반연수를 우선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등 우대책을 강구한다.

(3)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①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대비 철저

시·도교육청별로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해설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각종 연수교재 및 장학자료를 활용한다. 각급 학교는 연(월)간, 주간, 일일 교수-학습계획안 등에 관한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별도로 각급 학교에서는 연도별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참고로 학교급별 및 학년별 새 교육과정 적용연도는 다음과 같다.

- 2000. 3. 1 : 유치부, 초등부 1·2학년
- 2001. 3. 1 : 초등부 3·4학년, 중학부 1학년
- 2002. 3. 1 : 초등부 5·6학년, 중학부 2학년, 고등부 1학년
- 2003. 3. 1 : 중학부 3학년, 고등부 2학년
- 2004. 3. 1 : 고등부 3학년

② 학교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철저

지역사회 및 학교의 특수성과 창의성을 살려 「다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급 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사)은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장애보상을 위한 치료교육을 강화하며 장애영역별로 치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한다.

③ 개별화교육 강화

또한 각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 학생의 장애정도와 학습능력에 따라 개인별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지도하여야 하고 자율적인 개별화교육 수행을 위하여 교과 내용이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 능력별로 반편성을 하도록 하며, 협동교사제 및 보조교사제(자원봉사자)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④ 직업교육 강화

학교에서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transition*)을 목표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강화하며 지역 여건이나 학생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성에 알맞은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나아가 직업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모색하며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이에 대비한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한편 2001년도 신규 국고지원사업으로 직업교육 담당교사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연수사업은 특수학교 중등부 직업담당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내용은 특수학교 중등부 교사 전원에게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직업교과목에 대한 연수(2001~2004)이며 제1차 연도인 2001년도에는 600명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

⑤ 치료교육 강화

심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행훈련, 청능훈련, 생활적응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료교육 활동의 충실화를 도모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교사의 배치가 가능하나 별도의 정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시·도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다.

⑥ 특수교육 교원 현직연수 추진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직업 교육 담당교사 연수 등을 실시한다. 2001년도의 세부 추진내용은 직무교육과 초등·치료교육교사 자격연수, 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는 국립 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하며, 중등교사 자격연수는 공주대학교 중등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한다.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① 특수학교 지도 강화

특수학교의 장애별, 과정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직접 사립 특수학교 교직원 정(현)원과 사립 특수학교 설립자의 건실한 경영 관리를 철저히 지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립 특수학교의 학교운영비, 인건비, 시설·설비 지원비, 연수비 등을 공립 특수학교 수준으로 지원하고, 사립 특수학교 경영자에 대한 자율적·합리적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자연인이 설립한 학교인 경우 정관에 학교경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그에 대신할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경영을 건실화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자연인인 학교설립자는 조속히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장학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② 특수학급 운영 지원

특수학급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용 학습자료 제작·구입비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교재 및 교구 학습자료 제작·구입과 각종 검사도구 확보 등이 포함된다. 특수학급 운영 지원비는 교·급당 운영비 외에 별도로 지원한다. 특수학급 학생

에게는 교과서가 무상으로 지급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5조 제3항).

③ 장학협의 기능 강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 특수학교(급)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한 장학협의 기능을 강화한다. 장학협의 내용은 장애영역별, 학교별 동료장학·요청장학 및 임상장학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립특수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청은 국립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장학 협의·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에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사)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특수교육 전담 장학요원을 확충해 나간다. 미배치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사)은 전원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한다.

④ 취학 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취학편의 등)와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제5조(기숙사 등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취학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학생들의 장애정도, 통학거리, 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통학버스 또는 기숙사 중에서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학버스 배치기준으로는 통학생 45명당 대형버스 1대 또는 소형승합차를 구비하도록 하고 통학용 버스 및 기숙사가 부족한 학교(공·사립)에 대한 확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러나 가급적 사회생활 적응훈련 차원에서 장애학생 스스로 자가 통학할 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한다.

⑤ 특수학교(급)에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우선 배치

특수학교(급)에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전원 배치한다. 단, 2001년도에 전원 유자격자로 배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정원에 대한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요구한다. 단, 특수학급 정원은 일반학교 교사 정원에 포함하여 요구한다.

특수학교 교장(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일반학교 교장(감)의 승진후보자명부와 별도로 작성한다.

⑥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범 운영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특수학교(급)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며, 또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⑦ 기타 교육활동 지원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 도서 구입·제작을 지원한다. 이 때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준」의 적용을 감안하여 반영하되 일반교과서를 사용할 때는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또 시각장애학생용 점자교과서 신청은 교육부에서 수요조사를 한 후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에 점역을 의뢰하여 적절히 보급한다.

나아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등록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장애인 등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장애인에 대한 혜택 및 복지 사업에 대하여 널리 홍보한다. 그리고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 배치된 통합교육 대상자수를 철저히 파악하고 일반학교에 통합된 학생의 교육에 대한 추수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장애학생 통합교육 사례

(1) 일본의 통합교육

일본은 일찍부터 장애인복지와 교육에 상당한 투자와 적극적 행정을 펼쳐 왔다. 여기 소개하는 한 초등학교의 통합교육 사례는 일본의 현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실태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도쿄의 신주쿠구 제4초등학교에서는 장애인 전담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돕고 있다. 도쿄 신주쿠의 시모오치아이 제4초

등학교는 주택가에 위치한 공립학교인데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학교에는 이제 더 이상 ‘장애아’가 없다.

야마나카 아사미(9세·3학년) 양은 휠체어를 탄 ‘특수한 보통아이’ 중 하나이다. 어렸을 적에 뇌성마비를 앓아 두 다리를 못쓰는 그는 휠체어 없이는 꼼짝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생활은 다른 아이들과 별 차이가 없으며, 26명의 급우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는 함께 운동장에 나가 어울려 논다.

그녀가 쓰는 책상은 다른 아이들의 것과 다르다. 컴퓨터용 데스크처럼 오른쪽 옆으로 휘어지는 책상 한 개가 더 붙어있다. 교실 뒤편의 사물함까지 오가지 않아도 되도록 책상에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늘 앉아 있어야 하는 그녀를 위해 의자엔 특수하게 고안된 쿠션이 달려있다.

책상과 의자의 재질도 보통 것과 다르다. 그녀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주문 제작한 제품이다. 성장이 빠른 연령이라 매년 학년초가 되면 신체 치수를 새로 측정하여 교체해 준다. 특수 주문 의자는 교실 외에 공작실과 음악실에도 놓여있다.

그녀만을 위한 시설은 이것만이 아니다. 1층은 물론이고 3학년 교실이 있는 2층에도 아사미 양이 쓰는 휠체어가 별도로 놓여있다. 2층 여자 화장실의 장애인용 변기는 그녀를 위해 작년에 새로 설치됐다. 그녀가 3학년에 진급해 2층 교실로 올라오게 되자 화장실 문턱을 없애고 변기를 개조한 것이다.

학교측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지만 교육활동 만큼은 특별취급이 없다. 초등학교 입학 후 3년 간 아사미 양은 학교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가해 왔다. 운동회나 학예회 같은 행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작년 운동회 때 3학년생 전통무용 공연에서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추었다. 급식당번 날이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음식을 받아다 식기에 담아 주곤 한다.

부족한 신체적 능력을 보완해주는 사람이 전담 보조교사인 가토 구미코 선생님이다. 신주쿠 교육위원회가 아사미 양 한 사람을 위해 채용한 가토 선생님은 지난 3년 간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살피주었다. 안아서 계단을 올려주고, 체육시간이면 휠체어에 그녀를 태우고 운동장을 뛰어 다닌다. 아사미 양이 휴식시간 때 좋아하는 숨바꼭질이나 기차놀이를 할 수 있는 것도 가토 선생님이 손발이 돼주기 때문이다.

아사미 양의 어머니 구미코 씨는 처음 그녀를 특수학교에 넣을 요량이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용 양호학교를 보고 온 뒤 생각이 확 바뀌었다. 특수학교는 시설은 좋지만 학생 수가 한 학년에 1~2명뿐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다. “친구가 적으면 딸이 쓸쓸하겠다는 생각에 일반 초등학교에 넣기로 결정했죠. 딸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어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봄방학을 앞둔 대청소가 시작됐다. 아사미 양도 손걸레를 들고 휠체어에서 내려와 교실바닥에 주저앉은 뒤 걸레질을 시작했다. 두 팔로 다리를 끌어당기며 조금씩 전진하는 게 몹시 힘에 부쳐 보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녀도 요령을 피우지 않고 온몸을 써가며 설새 없이 손을 놀렸다(출처 : 디지털조선일보, 2000.5.9).

(2) 프랑스의 통합교육

① 프랑스의 장애청소년 정책

등학교 때 교통비 지원...보조금 별도 운영

프랑스의 장애청소년들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존중해야 할 모든 장애인 권리 조항 중 장애청소년 부문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권리의 제1조가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이다. 장애청소년들은 수업 능력이 있는 한 보통 청소년들과 똑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장애청소년을 일반 학급에 배치하

는 것에 대해 '개별적 참여'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이다. 특수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라면 장애청소년들을 집단으로 묶어 그들만을 따로 배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청소년들의 독자적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일반 학생들에게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 조항은 유치원에서부터 적용된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교육 정책 중 '등하교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규정도 눈길을 끈다. 장애 정도가 50% 이상으로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부모가 승용차로 등하교시킬 수 없는 경우, 등하교에 드는 교통비를 각 지역의 특수교육위원회(CDES)가 전액 부담한다. 매일 택시를 이용해도 괜찮다고 적혀 있다. 일단 본인이 돈을 낸 뒤 요금 영수증, 학교 시간표, 보조금 신청서 등을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환불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국가 보조금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보조금도 별도로 운영한다. 그 지급대상은 출생 직후의 유아부터 20세 이하의 청소년까지다. 심지어 외국인 장애아의 경우도 가족의 장기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으면 내국인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2000년 1월 1일부터 새로 실시되는 규정에 따르면 매월 최하 518프랑에서 최고 5,755프랑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청소년의 교육시설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된다. 우선 일반학교에서의 장애아동 특수반 운영은 교육부장관 소관이다. 장애인 의료시설을 갖춘 특수학교는 사회문제 담당 장관의 관리를 받는다. 그리고 자폐증 등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진 장애아동과 신경과 감각마비 장애아동과 같은 보다 전문적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보건장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특수시설에서 교육받는다.

장애청소년을 돕는 단체들은 요즘 인터넷을 통한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행동이 불편한 장애청소년들이 편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특수장애아

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사이트들도 있다. 사회의 온정을 유도하거나 전문가와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의 조언을 접수하는 사랑의 인터넷 운동이 그러한 것들이다(출처 : 디지털조선일보, 2000.3.14).

② 루이 이소라 공립중학교의 사례

「장애인과 일반 학생이 함께 공부하면 모두에게 득이 된다.

이것이 한마디로 프랑스의 장애청소년 교육정책이다. 그 생생한 현장이 루이 이소라 공립중학교다. 루이 이소라 중학교는 파리 동남쪽 외곽 도시 크레테이외에 있다. 이 학교에 들어섰을 때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문턱과 계단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선형 통로가 5층 건물을 휘감아 돌면서 각 교실과 연결된다.

휠체어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마음놓고 학교 내부를 누빈다.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학생을 위해 통로 벽면에는 다시 손잡이가 달려있다. 학생 식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려고 손을 내밀면 저절로 열린다. 장애학생들을 위해 자동문이 설치돼 있었던 것이다.

한 장면을 보곤 어느덧 눈가엔 이슬이, 입가엔 미소가 떠올랐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이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타고 식당에 오는 장애학생 뒤엔 한 일반 학생이 붙어 있었다. 그 일반학생은 장애학생과 뭔가 도란도란 얘기하며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다.

장애학생은 또 결코 교실이나 식당, 혹은 도서관에 처박혀 있지 않았다. 이 학교 운동장에서는 다리를 절거나, 몸이 약간 비틀어진 학생들을 그렇게 수시로 볼 수 있었다. 물론 밝고 힘차게 뛰어 다니고 있었다. 더더욱 자신들 끼리만이 아니라 일반학생과 어울려 스스럼없이 웃고 장난치고 있었다.

루이 이소라 중학교는 장애청소년들이 동갑내기 일반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2개 공립 중학교 중 하나이다. 20년 전부터 일반학생과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실시해 왔다. 전교생 500여명 중 장애학생은 50여명이다. 대부분 장애학생들은 특수교실에서 공부하지만 그 중 8명은 일반학생

들이 있는 학급에 들어가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경쟁한다.

한 장애학생은 이렇게 학교자랑을 했다. “여기서는 정상과 장애인이 차별이 없고 모두가 똑같아요. 장애인 특수학교보다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죠.”

물론 장애학생들과 일반학생들 사이엔 차이가 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등하교 때 받는 교통수단 측면의 혜택이다. 장애학생들 대다수는 일반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집 근처가 아닌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당연히 교통비가 만만치 않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다. 프랑스 보건부는 우선 장애학생들을 위해 엠블런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더 일반적인 것은 택시비를 내주는 것이다. 심지어 파리에서 이곳까지 택시로 왕복하는 장애학생들의 택시비도 정부에서 대신 내준다. 이와 같은 교통수단 지원은 장애인 권리 조항에 명시돼 있다.

매주 금요일 오전 장애학생들은 대형 버스를 타고 주변의 공공 체육 공원을 찾아 체육수업을 받는다. 이 때도 인근 지역 각급 학교에서 온 일반학생들과 함께 어울린다. 학교를 찾았을 때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실시중인 ‘2000년 달리기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학생들이 달린 거리를 차곡차곡 모아 파리에서 시드니까지의 거리 1만 8,000km를 채우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장애청소년들도 금요일마다 휠체어 바퀴를 굴리거나 목발을 짚거나 아니면 서툰 걸음으로 일반학생들 뒤를 쫓아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장애청소년들도 똑같은 코스를 달려 그동안 모두 1만 2,218km를 채우는 데 당당히 동참했다.

이 학교의 다니엘르 르모조프 교장은 ‘일반학생의 부모들 중 그 누구도 우리 학교의 교육방식에 항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방법이 교육적으로 일반학생들의 정신적 발달에 큰 도움을 받고있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소개했다(출처 : 디지털조선일보, 2000.3.14)

(3) 뉴욕 퀸스구 227공립중학교의 통합교육

미국의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뉴욕시 퀸즈구의 잭슨 하이츠에 소재한 제227공립중학교(PS 227)의 경우 오전 8시 반쯤 등교하는 5~8학년까지의 전교생 1,600여명 사이에는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12명이 섞여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인해 정신지체와 갖가지 장애를 갖게 된 살로먼(12·6학년·한국명 광덕)이 휠체어 리프트가 딸린 학교 버스로 도착하자, 그의 학교에서 모든 생활을 전담하는 보조교사 팔러 양이 맞았다.

살로먼의 정신연령은 5~6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살로먼의 어머니 신철숙(44)씨는 그가 3~4년 전부터 비로소 말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야 휠체어에서 보행기로 바꿨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도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겨안는 친구들의 표정에선 어색함이란 전혀 없다.

1975년에 제정된 뒤 몇 차례 수정된 미 연방 '장애인교육법(IDEA)'은 모든 아동들이 장애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무료로 충분한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법(Public Law) 94-142는 장애학생들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이 같은 욕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장애학생이 사는 지역 내에 적절한 학교가 없으면 이웃 교육구에 장애학생 수용시설을 갖춘 학교까지 무료로 등·하교하게 된다. 언어 치료, 청각 서비스, 심리 진단, 모든 보조기구 등 교육비는 물론 전액 무료다.

살로먼도 특수학교에 다니다 1999년 9월부터 통합교육을 위해 제227중학교로 전학하였다. 이 학교에선 살로먼과 같은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자폐증, 정서장애 등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12명의 학생들이 다른 일반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김벌리 허쉬 담임교사는 '살로먼이 처음에는 수업 중에 소리를 지르고 제멋대로 행동했지만, 손을 들고 말하고 자리에 똑바로 앉아있는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었고, 일반학생들도 장애학생들을 돕고 이해하는 법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 학생 1명당 보조교사 1명이 수업내내 함께 한다.

엘리자베스 오펔스 교장은 '장애학생의 정규수업 참석률은 뉴욕시 평균인 51%보다 훨씬 높은 65%'라며, '학교로서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서로 어울리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지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장애학생들은 이밖에 자신들만을 위한 독립된 수업을 따로 받는다. 정신지체 아동들에게 정규수업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보고 배우는 과정이라면, 별도수업은 장애학생들의 수준과 방식대로 학습하는 시간이다. 특수교육 교사인 윈디 그린스펀씨는 '사회 과목에서 문명에 대해 배웠다면, 스스로 이집트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모래라는 사물을 느끼는 등 자신들의 수준에서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건물 2층에는 신체동작 훈련을 위한 작업 치료시설과 장애학생 전용 체육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 학교는 12명의 장애학생만을 위해 특수교육 교사 2명과 7명의 보조교사, 10명의 작업·물리 치료사, 3명의 언어 치료사를 두고 있다. 이날 시각장애 학생 2명은 치료실에서 2명의 치료사와 함께 확대경을 이용해 그림책 속의 그림을 들여다보며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학교 전체는 학생이 겪는 장애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느 곳이든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행기와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도 함께 쓸 수 있는 화장실과 전용 엘리베이터와 곳곳에 설치된 램프시설, 그리고 강당에는 휠체어를 무대로 들어올리는 리프트 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 학교의 오펔스 교장은 '부모가 한 글자도 읽거나 쓸 수 없었던 6학년 여학생이 최근에 5~6개의 문장으로 글을 썼고, 정신지체 정도가 심한 한 여학생이 2문장을 썼다는 기쁜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살로먼은 이날 수업을 옮겨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서툰 얘기를 나누며 종일 즐거워했다(출처 : 디지털조선일보, 2000.3.21).

(4) 서울 한남초등학교의 통합교육

“한 반에서 공부해야 서로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웁니다.”

지난 2000년 3월 9일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한 교사와 기자가 만났다. 장애어린이 14명의 특수교육을 맡고 있는 유장순(39) 교사는 장애 어린이들이 색칠한 그림책을 펼쳐 보였다.

매 학기 새 학생을 받을 때마다 ‘이 학생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느냐 아니라,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느냐’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상아와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찾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서 시작합니다.

한남초등학교는 지난 1985년에 특수학급 2학급을 개설하고,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함께 가르치는 통합교육을 시작했다. 장애아동들이 보통 때는 일반학급에서 배우다가, 하루 1~2시간씩 들어있는 국어, 산수 시간에 특수교육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유 교사가 저학년 반을, 김희수(57) 교무주임이 고학년 반을 맡고 있다. 유 교사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돈을 내는지, 남에게 미안하다고 할 때 어떻게 말을 거는지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자폐아 민경이(10·여·가명)와 성준이(10·가명), 진행성 근육수축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윤석이(13·가명),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장애 아동 선경이(9·여·가명)...

이 아이들이 일반아동들과 한 반에서 부대끼는 것은 너무 벅찬 일이 아닐까?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놀던 성준이는 일반아동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교실로 돌아왔다. 4학년 교실로 올라가는 층계를 오르던 중 시작종이 울렸지만, 성준이를 둘러싼 5~6명의 아이들은 ‘빨리 가야겠다. 혼나겠다’고 발을 구르면서도 누구 하나 성준이 손을 팽개치거나 등을 밀지 않았다.

이 학교의 이석경(58) 교장은 ‘더러 한 반에 40여명씩 가르치면서, 장애어린이까지 신경쓰려니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있긴 하지만, 그때마다 원래 옳은 일은 좀 불편하게 마련이라고 격려해 준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야 장애아들도 일반아동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이런 아동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모독하지 않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이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바탕이 아닐까요. 나는 우리학교 아이들이 「병신」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혹 앞으로도 그런 말을 쓰다 걸리는 아이가 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낼 겁니다.’

아직 한남초등학교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3월 1일 현재 서울시 내 487개 초등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263개교에 불과하다. 그래도 초등학교는 나은 편이다. 입시경쟁이 시작되는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장애학생 숫자가 급격히 떨어진다.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는 119개, 고등학교는 단 8개뿐이다.

백정신(여·52)씨는 뇌성마비로 사지를 못쓰는 아들 박지효(19)군을 일반 중고등학교에 보냈다. 박군은 초등교육을 특수교육기관에서 받았다. 백씨는 왜 만난을 무릅쓰고 아들을 일반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 진학시켰을까?

‘초등학교 때 장애인 친구들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지효가 일반인과 거리감을 느끼더군요. 어차피 보통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이래선 안되겠다 싶었어요. 일반 중학교에 보내고 나니 아이가 「나도 정상아들과 경쟁할 수 있겠다」, 「장애가 극복 못할 일은 아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특수교육기관에서 했다면 지효는 영영 정상인과의 마음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효는 올해 H대 전자전기공학부에 입학했다. 요즘도 아들을 학교에 통학시켜주고 있는 백씨는 ‘벌써 몇몇 친구들이 다가와 지효를 강의실까

지 데려다주고, 강의내용을 설명해주는 친절을 보여준다'고 했다.

장애인들과 어울려 공부하는 것이 정상아들에게도 보탬이 된다는 게 백씨의 지론이다. '지효를 고등학교 3년 내내 도와준 단짝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효를 내가 도와줬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지효한테 배운 게 더 많다. 공부하기 싫을 때 지효는 저 몸을 가지고도 공부하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극이 많이 되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남상인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일선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라고 하면, 대학 진학지도도 힘든 학교에 왜 장애인을 보내느냐며 완강히 거절한다'며 고등학교 특수반 하나 열려면 교실 개설비용 등 2,600여 만원을 지원하고도, 몇 개월 동안 교장과 해당지역 교육청을 설득하는 전쟁을 치른다고 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에는 1997년까지 학급당 연간 12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경제 관리체제로 인해 1998년에는 지원금이 62만 4000원으로 줄었고, 이와 같이 삭감된 지원금은 올 신학기까지 같은 액수가 지급됐다고 한다. 한남초등학교의 유장순 교사는 '아이들 교재 한두 권 사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했다(출처 : 디지털조선일보, 2000.3.14).

(5) 울산 양사초등학교의 사례

‘또래도우미’ 가정교사 역할 톡톡히

특수학급 개방...함께 놀게 유도

일반-특수 교사 협력수업 실천

이것이 울산 양사초등학교의 통합교육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는 신문 보도 제호이다. 보통 학교의 맨 후미진 곳에 있게 마련인 특수학급,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놀릴까 두려워 등하교 때를 빼고는 모습조차 보기 힘든 장애학생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울산 양사초등학교(교장 이성도)에 다니는 16명의 특수학급 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서로 짝을 이루어 스스로없이 공부한다. 함께 과제를 만들고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서로의 집에 놀러갈 만큼 가까워졌다.

올해 3월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양사초등학교는 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서 함께 공부시키는 통합교육을 통해 학습효과는 물론 아동들의 사회성 기르기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학습능력이 떨어져 숫자나 글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특수학급 1~6학년 학생들을 같이 교육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사들의 치밀한 계획과 고심 끝에 마련한 '또래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11가지가 있다. 1년 동안 일반-특수학급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자매결연을 맺어가며 '통합'을 실천했다.

이 중 통합의 일등공신은 '또래 도우미'이다. 평상시 통합학급(장애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급)에서 함께 수업하는 정도 장애학생과 일대일 결연을 맺은 학생들이다. 도우미 학생들은 '○○랑 ○○랑 공부해요'(학습지)를 이용해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에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함께 하는 것 외에도 놀이활동과 화장실 같이 가기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교정해 주는 '개인교사'라 할 만하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광욱이와 짝을 이룬 6학년 김원룡(12)군은 '혼자서 중얼대고 갑자기 고함까지 치는 광욱이가 싫은 적도 많았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도 하고 함께 과제물도 만들다보니 다른 친구들처럼 친해졌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 수학과 국어를 제외한 교과 수업이 일반학급에서 진행될 때는 특수학급 교사가 참여해 협력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은 장애학생이 소속감을 갖게 하고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16명의 장애학생들은 각자 교사 도우미와도 결연을 맺었다. 이들 교사는 장애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점심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친밀감과 사회성, 의사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 특수학급을 항상 개방해 일반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면서 전통놀이 코너, 독서코너, 시청각 코너에서 함께 어울려 활동하도록 유도했다. 통합학급에도 전래놀이, 심성놀이 등의 자료를 구비해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에 일반학생과 함께 놀이를 통해 친해지도록 했다.

정희효 교사(특수학급 담당교사)는 '서로 이름을 부르고 교실 복도를 손잡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일 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했다.

양사초등학교는 통합교육 결과 장애학생들의 책 읽기와 간단한 덧셈 등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에도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1월 16~17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최한 '통합교육 우수 시범학교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권호순 교사(연구주임)는 '통합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화하고 도우미 교사에 대한 연수 실시, 그리고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출처 : 한국교육신문, 2000.12.11).

2.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혈연 중심의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족은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감이나 상호적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가족 구성원은 운명공동체라 생각하여 서로 강한 유대감을 기반으로 가족관계에 개입이 강조된다. 그런데 이런 개입은 든든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는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발달 및 재활과정에 있어서 중요

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과정에서 중대한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어린이와 장애청소년의 사회적 발달 및 재활과정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것이다. 장애어린이와 장애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나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과 사회체계의 맥락 속에서 폭넓고 광범위하게 실시되어야 한다(송경선, 2000). 이러한 이유로 최근 장애인을 둘러싼 가족참여나 지원 등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이소현, 1999).

장애청소년은 청소년기라는 생의 주기단계에 위치하여 사춘기를 통해 신체적, 사회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고, 성적 변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다. 이 시기에 보통의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독특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그러나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 스스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때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가능한 모든 자원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에게 장애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특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서비스가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장애청소년 가족은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심리·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청소년 개개인의 재활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활상담 및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배광웅, 1986).

가족 구성원으로서 장애청소년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청소년의 장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에 대한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배려 외에도 가족 구성원에 미치는 사회적·심리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성이 제기되는 것이다(양숙미, 199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고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모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1)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청소년기의 장애인은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사춘기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게 된다. 장애청소년은 생리적 발달에 따르는 성적 변화와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전에 그들의 변화에 대해 공포와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에 부모는 자기 자녀의 성과 장애와의 관계를 생각하느라고 심리적으로 혼란할 뿐만 아니라 장애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더욱 더 불안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 부담과 맞물리면서 가족내의 스트레스는 심화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비장애 가족과 장애인 가족간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나 가족결속력, 의사소통의 문제 등 심리적 갈등 상태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민, 1992).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보다는 가족 중심의 지원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강구가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에 장애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와 자매 등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심리적 특성을 토대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1)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관계

그 중에서 특히 아동의 양육을 일차적으로 전담하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그 대처행동 강화 등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김영미, 1989). 그리고 잦은 부부싸움이나 가족간의 갈등, 이혼 등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더 심한 우울 증상과 가족문제를 보이고 있다(김영민, 1992). 또한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장애를 가진 자녀를 집안에 방치하거나 버리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Levinson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7단계의 과정을 통해 아동의 장애를 수용해 간다고 한다(현 숙, 1994).

첫째 단계는 충격의 단계로 자신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충격의 단계이다. 장애를 가진 자녀와 평생을 같이 한다고 생각할 때의 압담함과 심리적 고통이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고통은 더욱 더 크다.

둘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로 '설마 내 아이가 그런 장애를 가질까' 하는 심리적 거부와 장애 증상을 거부하려는 부정의 단계에 이르게 되며, 이 때는 아동의 장애 증상을 그대로 수용하기를 꺼려서 여기 저기 '닥터 쇼핑'을 하며,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려는 지나친 부모의 강요에 장애어린이는 곤욕을 치르게 된다.

셋째 단계는 수치를 느끼는 단계로 자신의 자녀가 장애어린이라는 사실이 남 보기에 무척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이 심리 과정이 심하게 나타나면 모욕감을 느껴 아동을 집에만 가두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격리시켜 버리려고 하거나 심지어 기아나 미아가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단계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단계로 장애를 '죄'와 동일시하는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죄 값 때문에 자녀가 장애를 입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심리 과정에서 장애어린이가 측은해 보이거나 하면 때때로 지독히 미워지기도 한다.

다섯째 단계는 질투를 느끼는 단계로 자신이 장애자녀를 가진 것을

무척이나 괴로워하면서 정상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하여 질투를 느끼게 된다. 이 시기에는 남의 자녀가 정상적인 것을 보고 시기하게 되며, 장애 자녀를 가진 것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며 고통받게 된다.

여섯째 단계는 극단적 배척과 과잉보호의 단계로 장애어린이에 대해 지나친 배척을 하거나 정반대로 지나친 동정을 가지고 과잉보호를 하게 된다. 평생토록 뒷바라지를 해야한다는 사실이 성가시고 어렵다고 느낀 나머지 아동에 대해 심한 학대와 배척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거부적인 태도가 어떤 계기로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과잉 보호로 돌변해 버리기도 한다.

일곱째 단계는 적응의 단계로 이와 같은 온갖 어려운 심리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적응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된다. 장애자녀 때문에 가지고 있던 심한 심리적 부담감이 장애자녀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자세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이러한 갈등의 단계를 거쳐 건강한 적응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상처나 자존심 때문에 아이를 저버리거나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고, 또는 한 단계의 갈등상황에 고착되어 지속적인 가족 긴장과 가족 갈등이 만성화되기도 한다.

장애어린이는 성장하면서 부모들에게 새로운 부담감을 안겨주게 되는데, 장애어린이의 부모는 장애어린이의 욕구와 다른 자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이중적인 책임을 안고 살아가기에 그 갈등과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부모와 장애청소년간의 상호작용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들이 장애자녀의 독특한 행동발달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상호작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장애자녀만의 특수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그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부족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Girdner & Art, 1984).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일반아동에 비해 특별한 프로그램 및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

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2) 형제·자매간의 갈등 관계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장애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심리적 불안감 등을 겪게 된다.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감 등은 장애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장애로 인한 가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스트레스나 심리적 문제 등은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장애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의 형제나 자매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박민경, 1996).

장애어린이의 비장애인 형제에 대한 문제는 장애어린이의 스티그마(stigma)와 관련된 것으로서 장애어린이로 인해 부모의 사회적 관계에 지장을 주거나 형제들의 친구 관계,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정신지체아 형제들의 문제는 크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들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김명선, 1987).

첫째는 자기비하로 정신지체 형제가 자신의 가정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장애 형제들은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가치와 가문의 혈통에 대한 가치를 절하시키거나 비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신의 장애와 운명, 결혼문제에 대해서 정신지체 형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갖게 되거나 비판하게 된다.

둘째는 수치감으로 비장애 형제들이 정신지체 형제에 대하여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주위에 드러내기 싫어하거나 자신과 연관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특히 아동기나 사춘기로 인해 예민한 청소년기의 비장애 형제들에게는 더 수치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는 죄책감으로 정신지체 형제에게 형 혹은 언니, 동생, 오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그 형제와 함께 대화

해 주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마음, 그리고 때로 그런 형제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넷째는 부모의 비장애 형제에 대한 보상심리에 따른 부담감으로 부모가 장애어린이에게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대신 비장애어린이 형제에게 과잉기대를 하는 경우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다섯째는 정신지체아의 비장애인 형제들이 갖는 분노의 감정과 갈등은 주로 정신지체 형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정과 그 태도나 외모에 대한 것, 그 형제로 인해 자신이 받게 되는 피해와 상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 등이다.

여섯째는 정신지체아 형제의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부모님의 사망 후 정신지체 형제의 장래에 대한 보호의 부담감이 있다. 부모가 사망 후에 누가 그 장애형제를 보살펴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걱정을 가지게 된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가족은 중요한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가족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사회 적응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안이나 장애로 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을 촉진하게 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적응기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서 장애청소년에 대한 가족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장애청소년 가족간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연대감 및 자조집단의 형성을 꾀할 수 있다.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우선 장애청소년 가족의 가족 결속력, 가족 적응력, 가족의 의사 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파악하여 그 가족의

수준이나 분위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족간의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서 가족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제공해야 하고, 가족치료나 가족간의 상담 혹은 캠프 등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가족지원 프로그램 사례

우리나라에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각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가정의 사회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족을 일시적으로 쉬게 해주는 장·단기 장애인 보호 프로그램, 지지반 확충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부모 혹은 형제의 개별 상담, 문화답사 및 여행, 전문 가정 도우미 제도 등 장·단기적으로 장애인 가족의 가족 결속력과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 대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

(1) 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장애인 주간보호의 주요 목적은 장애아동이나 장애청소년을 항상 보호해야 하는 장애아동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장애아동이나 장애청소년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순수하게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주간보호 사업은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장애가족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장애인 주간보호 사업은 주로 보호 프로그램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

되나 이와 같은 1차적 목적 외에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아동이나 장애청소년이 여가활동이나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주간보호 시설이 많다. 혼자서 지하철 타기, 슈퍼마켓 다녀오기 등이 하나의 예가 되겠다. 그리고 미술, 요리, 동산, 야외활동 등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간보호 프로그램은 2~3명(주로 사회복지사나 보육사, 혹은 기능직이 담당)의 사업담당자가 10~15명의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외에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단기 보호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방과 후 공부방의 형태로 장애어린이나 청소년의 학교숙제를 돕거나 학과목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다.

통합교육 이념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어린이가 주간보호는 분리 측면이라는 비판에 따라 최근에는 통합적 보호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설 또는 환경, 그리고 예산 등의 문제로 비장애 어린이와의 통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2) 장애가족·형제 캠프

장애어린이를 둔 가정에서의 비장애 형제들은 본인에게 할당되어야 할 가족의 관심이나 배려가 자신의 장애형제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자기 연령에서 채워져야 할 관심이나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된다. 동시에 가족이 장애어린이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 의무, 양보를 강요받게 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며 이러한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가족의 의사소통과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장애 형제들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하고 장애형제와의 관계가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형제캠프를 진행하며 이러한 캠프는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경험과 자립심

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형제들이 캠프에 있는 동안에는 부부간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을 준다.

형제 캠프는 하절기에 주로 2박 3일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형제자매들만 참여하여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함께 이야기해요’,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공동체놀이, 캠프파이어 등을 통해 형제애를 돈독히 한다. 그리고 동일한 문제를 가진 가족들간에 상호적 지지도를 높여 문제 대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치료이론과 문제 대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조집단이론을 기초로 하여 가족관계의 정상화 및 가족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가족 캠프와 연계하기도 한다. 1박 2일 동안 부부와 부모,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시간 등을 갖는다.

(3) 부모 집단 상담 프로그램

부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자녀의 보호로 인한 만성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장애어린이, 부모, 특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장애 자녀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지 및 보완체계를 형성하여 원만한 가족관계를 이루도록 돕는데 목표가 있다.

부모 집단 상담은 부모 자신이 장애어린이를 둔 부모라는 정체감을 확립하는데서 첫 출발이 이뤄진다. 특히 장애어린이를 자식으로 둔 부모라는 동질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부모들이 서로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놓는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박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주 1회(4시간)로 6주 동안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참여하는 인원은 주로 15명 이하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별칭 짓기, 몸의 언어 듣기, 그림을 통해 자기 바라보기, 눈으로 이야기 나누기, 가족관계 이야기 나누기, 편지 쓰기, 사진 말 이야기 나누기, OK그램 분석하기, 상대방 속에서 자기 찾

기, 상상여행 떠나기, 삶의 만족도 검사, 칭찬하기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4) 장애청소년 문화·역사 탐방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학교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에서 장애어린이나 청소년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장애어린이나 청소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약 15여명 정도의 장애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일 혹은 1박 2일의 기간 동안 문화·역사 탐방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특히 장애청소년의 생활훈련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의 도움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5) 가정 도우미 제도

가정 도우미 제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집안에서조차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정 내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두 차례의 기본교육과 한 차례의 보수교육을 통해 가정 도우미를 양성하고 이 도우미들은 각 가정에 찾아가서 장애인의 운동이나 가사, 외출 등을 돕는다. 이들은 장애인 개인의 생활능력 및 사회참여기회를 향상시키고,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지 및 보완체계를 형성하여 가족통합을 도모한다.

특히 교육을 받은 전문 도우미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의료, 사회, 문화 활동, 가사지원, 말벗 등을 통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립능력 향상, 사회참여 확대, 가족의 만성적 스트레스 해소, 가족기능 유지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본은 유료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우미에게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유료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쿠폰 또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여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6) 장애아동 일일 나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의 기회가 적은 장애아동에게 여행, 캠프, 관람 등을 통하여 사회규칙을 알게 하고 질서를 배우며 사회성을 넓혀 가도록 한다. 일일 나들이로는 계절별 여행(단풍구경, 눈썰매 타기 등)이나 주제별로 여행(갯벌 탐사 등)을 한다.

(7) 장애청소년의 형제·가족 워크숍

이것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이다 (박민경, 1996). 장애인 형제나 자매와 함께 자랐던 성인 비장애 형제를 토론자로 초청하여 현재 장애인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 비장애 형제들과 만나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존슨 홉킨스 대학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성인 비장애 형제의 체험담을 듣고, 정보 교환을 하며, 특히 문제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나누는 워크숍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제들은 6세~12세로 구성되며 서로 허물없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집단 활동, 게임, 그리고 미술작업에 참여한다. 그 활동들은 전문적인 집단 지도자에 의해 진행되며 그들의 문제와 욕구를 토론하면서 진행된다.

워싱턴 시의 갤로데(Gallaudet) 대학 부설 시험학교는 청각장애아동의 형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청각장애인을 형제로 둔 청각장애인 가족에서 독특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청각장애인 문제와 청각장애인이 학습하는 내용을 직접 견학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한다.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듣게 되는지 그 과정을 듣고 청력 학습실에서 실습도 한다. 이 기간에 지도자는 청각장애아동과 그들의 형제들이 만든 연극에 참석하기도 한다. 연극은 놀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형제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안하고 표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가족 성원의 지지 확장 프로그램은 소규모로

진행된다. 형제와 부모 두 집단으로 구성되어 동시에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은 형제와 부모의 각 집단에서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집단 지도자는 장애 형제와 함께 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장애자매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를 토론한다.

이 워크숍 종결 시에는 부모와 형제들이 한데 모여 바베큐 파티 등 오락적인 활동을 함께 하여 분리된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마련한다.

앞서 살펴본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가진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을 둔 가족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장애인과의 적절한 관계 형성 및 스트레스, 의사소통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기존의 의료적 모형에 기반을 둔 재활사업의 주된 모형에서 생태학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시키며, 특히 가족의 '적절한' 개입을 향한 실천 방향으로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이념적 목표들을 지향하며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실천의 궁극적 방법으로 역할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3. 직업재활 프로그램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직업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더불어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은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에게 경제적인 원천을 제공해주며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아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강위영 외, 1997).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은 생계유지 수단이며 사회적 역할수행의 도구, 사회적 지위의 지표, 자아실현의 도구라고 하는 이론적인 역할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있어 일상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직업활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위영(1998)은 장애인에게 직업이란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는 장(field)이자 사회적응(social adjustment)을 통한 생활 안정의 추구이며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생활 양식이라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도 직업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야 할 부분은 직업의 선택 과정이다. 직업의 선택 과정은 대부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직업적인 전망 및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활동을 통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게 된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본격적인 사회활동의 진입을 위한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직업활동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장애청소년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주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동등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청소년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성인이 된 후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미취업 또는 불완전 취업의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개인의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인 위치를 불안하게 하며 자아개념의 형성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강위영 외, 1991).

또 장애청소년은 심리적·물리적·사회적 장애물로 인해 직업의식의 결여, 부정적인 자아 의식, 비현실적인 동기 형성, 경직과 행동 및 성격상의 견고성, 작업 실패 경험의 누적, 추상 능력의 제한 등의 직업 적응과 직업 훈련에 대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강위영, 1991).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장애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올바른 직업관 확립과 직업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이 청소년기에 있어서 바람직한 직업재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의 정의

현재 세계적으로 정착된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의 개념 규정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선포한 1955년의 「권고 제99」호와 1967년(1970년 개정)의 「직업재활의 기본원칙」에 나타난 정의가 있다. 즉,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상의 여러 지원으로서, 예를 들면 직업 지도, 직업 훈련, 직업 선택 및 소개를 포함한 계속적이고 총체적인 재활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장애인재활협회(RI : The Rehabilitation International)의 직업재활위원회는 「직업재활의 장래를 위한 지침(1972)」에서 직업평가, 직업지도, 직업전 훈련, 직업훈련, 직업알선, 보호고용, 사후지도를 포함하여 직업재활이라 하였다.

이상의 개념을 포괄하여 정리하면 '직업재활은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기능훈련 등의 과정을 통해 직업적 가능성을 개발하여 취업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지향해 나가도록 사후적인 지도를 포함한 재활

복지의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오길승, 1999). 직업적 가능성에 대한 개발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직업재활 과정을 통해 직업능력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심리적·사회관계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직업태도를 가짐으로써 취업 성취는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 통합을 지향하도록 하는 직업재활의 본질을 말한다.

1967년에 채택한 의 「직업재활의 기본원칙」에서는 직업재활의 실시 원칙을 다음의 6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그것은 ① 장애인이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해 조직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②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신속하게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③ 장애인 당사자가 가진 직업재활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④ 의료적 지원은 직업재활의 어느 단계에서도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⑤ 직업재활은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기에 시작해야 하며, ⑥ 재취업, 기타 발전적 변화 가능성이 있을 때는 즉시 발전적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2) 장애인 직업재활의 국제적 동향

일을 하려는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며 이에 대한 지원은 사회와 국가의 의무이다(오길승, 1998). 1919년 의 발족을 통해 전상 장애인이 급속하게 출현하던 세계 제1차 대전 말기부터 종전될 때까지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세계 제1차 대전 직후에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지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업재활의 정책과 기술이 출발되었으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직업재활의 체계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전상 장애인 직업 대책이 직업재활의 출발

장애인 고용정책이 태어난 시기는 제1차 세계 대전 후 약 20년 간이라 할 수 있다. 전쟁 중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노동재해 보상정책'이 선진적으로 실시되었고, 1915년에 「노동자재해보상법」과 1919년 영국의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에 대한 보상 실시하였으며 1920년에는 맹인법을 제정했다. 서독은 1920년에 「중증장애인고용법」을 제정했고, 동년 미국은 세계 최초의 「시민직업재활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924년에는 프랑스는 「장애인고용법」을 공포하고 참전 군인이나 유가족, 전쟁피해자 등의 고용을 확보할 목적으로 10%의 고용율을 결정했다. 이 시기에 있어 고용의 특별한 관심대상은 군인과 전쟁의 피해를 직·간접으로 받은 노동자들이었다. 다만 군인대책으로서는 각국이 정부에 전문적인 군인보호사업 담당기관을 두고 원호사업을 실시했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노동자 재해보장대책을 실시했다. ILO는 노동자 재해보장의 수준을 높여서 실시하도록 세계 각국에 권고하기 위해 1925년에 「권고 제22호」로 「노동자보상의 최소한 규모에 관한 권고」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노력목표를 설정하도록 역할을 했다.

(2) 일반 장애인 직업재활로의 전환

1943년에 미국은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대상을 정신지체와 정신질환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한 영국은 1944년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율을 3%로 결정하고 지정 직종 고용과 보호고용을 강화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1944년에 「장애인재고용법」을 제정하는 등 1940년대는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처했던 노동력 재생산 정책이 진전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종전을 예측한 ILO는 제71호 「전쟁으로부터 평화에의 과도기에 있어서 고용조직에 관한 권고」를 1944년에 공포하여 세계 각국은 전쟁 종결 이후의 국력회복을 위해 군사노동력을 전환하여 평

화산업에 진력할 것을 권고했다.

군인 대책 중심의 전쟁기가 지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정 정책이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필요하게 되자 프랑스는 1945년에 「사회보장법」을,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법」을, 1947년에는 노르웨이가 「고용촉진법」을, 동년에 일본은 「노동기본법」과 「노동자재해보상법」을 각각 제정했다. 1940년대는 전쟁으로부터 평화로의 전환기로 UN은 두 번 다시 인간생활을 붕괴하는 행위가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인간중심의 지도원리로서 「인권선언」을 1948년에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3) 직업재활의 기반 확충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직업재활의 기반 확충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입법이 선진국들에서 성립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ILO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미비한 국가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계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권고를 선포했다. 1950년에는 제88호로 「신체 장애인의 직업 훈련 권고」가 선포되었고, 1955년에는 제99호로 「신체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가 선포되었으며, 1962년에는 제117호로 「직업훈련권고」가 제시되었다.

특별히 제99호의 권고로 제시된 「직업재활의 원칙과 전개방침」은 1960년대까지 세계 각 선진국들이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정책적으로 인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프랑스는 「할당고용법(1955)」과 「재활기준법(1957)」을 성립시켰고, 덴마크는 「재활법」을, 벨기에는 「장애인사회재고용법(1963)」을, 오스트레일리아는 「보호고용법(1967)」을 각각 제정하였다. 한편 미국은 「직업재활법」을 1968년에 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철저히 전개했다. 일본도 「직업훈련법(1958)」,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1960)」을 제정하여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선택고용 등에 관한 ILO의 권고 99호의 내용을 수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1960년대는 세계적으로 전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져 왔

으며 인력 부족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유자격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구미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이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자격을 가진 장애인들은 일반기업이 받아들였으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문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업재활이 다음의 1970년대부터는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는 역사적 필연성이 나타난 시기였다.

(4) 중증장애인을 향한 직업재활대책의 궤도수정기

고용기회가 주어진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자립을 위해 직업평가,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 직업재활이 1960년대에 활성화되었으나 그 후반부터는 종래와는 다른 직업재활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경증장애인 중심의 일반고용을 목표로 했던 장애인 고용정책이 한계를 가져오면서 중증장애인 취업문제가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표출된 시기가 1970년대이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중증장애인 대책의 전환점에서 각국 나름의 대처방법을 강구한 결과 다원적인 지원형태가 나타났다. 미국은 고용의 긍정적 계획과 고용지지적 서비스를 발전시켰고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은 고용지지 서비스를 장기화와 확대시켰으며 일본, 이집트, 독일 등은 할당고용을 강화시켰다. 또한 벨기에, 프랑스 등은 보호고용을 발전시켰고, 네덜란드는 실업대책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회고용을 발전시켰다. 그 중에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전환을 법과 행정의 재편성 하에 명확하게 시행한 나라가 영국, 독일, 미국이다.

예컨대 미국은 종래의 고용모델 재활을 생활모델의 재활로 확대한 1973년의 재활법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직업평가, 직업훈련, 작업기재 등의 제공만으로는 직업재활이 생활조건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직업 이전에 달성해야 하는 교육, 도우미, 이동서비스, 주택, 심리적 사회적 적응 등의 총체적인 지역사회 생활 조건에 대한 지원이 선행해서 이루어져야함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재활법」에서는 직업생활에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먼저 사회생활을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에의 참가훈련과 자립의 조건정비를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3)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의 흐름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장애인 직업재활의 역사는 주로 전쟁 후의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동란에 의해 발생한 전상장애인을 위한 고용이 최초로 성립되었으며, 그 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수용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고용 형태와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직업재활이 성립되었다.

한국의 직업재활 방향은 크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고용 및 직업재활 형태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고용형태로 나눈다.

(1) 장애인 보호고용이 직업재활의 출발선

UN의 국제장애인 해(1981년) 결정은 아·태 장애인 10년 선포로 이어지고, 우리나라도 「심신장애자복지법」 속에 장애인고용정책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면서 장애인 직업정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다. 그 이전 삼육아동불구원(1952년, 현 삼육재활원)에서 장애아동에게 편물지도와 명회원(1968년)의 목각, 편물, 수예 등 3과목의 직업재활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시설 중심의 고용전달체계를 태동시킨 선구자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동년 11월 2일에 보건복지부 전신인 보건사회부에 재활과(1994년, 장애인복지과로 개칭)가 신설됨으로 정책수립, 산하단체의 직업재활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지원 및 지도 감

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구로서 그 위치가 정립되었다. 그리고 재활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부 산하의 고용전달체계가 성립 확대되었다.

보건사회부는 1982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증장애인을 위한 요양시설, 직업훈련 또는 훈련 후 그 시설에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시설 등 수용시설과 재가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로 분류하여 수용시설에 자립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연차적 부설계획을 수립하였다(보건사회부, 1985).

1983년에 직업재활시설 보장정책을 수립하고 46개 시설을 지원했고 2개 복지시설에 직업훈련실을 증설했다. 1984년에 직업보도를 통한 시설수용자에 대한 자활·자립정책을 수립하고 51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업재활을 하도록 지원했고, 22개 장애인복지시설에 자립작업장을 설치·운영했으며 재가장애인 직업재활확대 및 장애인 적성직종개발 및 취업기회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했다(보건사회부, 1986).

1970~1980년대의 탈시설화 영향과 장애인복지의 발전적인 국제 추세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복지를 종합적으로 시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서울시는 1982년도에 「서울장애종합인복지관」을 설립하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원」에 운영을 위탁하였고, 1986년도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국 각 시·도에 1개소 이상씩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1996년도 말까지는 종합복지관 27개소와 단종복지관 14개소를 설립하여 민간법인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직업재활사업을 포함한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1948년에 정신지체인 수용시설인 중앙각심원을 대통령령 제94호에 의해 설립하였고 1960년에 국무총리령 제64호에 의해 국립각심원으로 직제를 개정하였던 국립재활원(대통령령 제11954호)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약 61억원을 투입하여 건평 4,586평의 규모로 확대 건립하고 입소장

에인에 대한 의료재활, 생활훈련과 함께 재활자립을 지향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법인에까지 확대 보급할 시범사업으로 1986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2) 노동부로 이관된 장애인 직업-일반고용으로 전환

19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1991년에 동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장애인의 일반 고용정책이 수립·실시되었다. 1987년에는 장애인고용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사업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설립을 건의했다.

1988년 당시 평민당의 이철용 의원 외 83명, 민정당의 양경자 의원 외 61명, 공화당 의원 외 34명, 민주당의 이인제 의원 외 57명 등의 이름으로 4당이 각각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제144회 정기국회에 발의하였으나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위원장 이상수 의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4당의 법안을 단일안으로 수정하여 1989년 12월 6일 제147차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1989.12.11~13)와 국회 본회의 결의(동년 12월16일)를 거쳐 1990년 1월 13일에 법률 제4219호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후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함)이 공포됨으로서 장애인 일반고용정책이 시행되었다.

1991년도에 일반고용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정책수행을 위한 일반고용 전달체계가 노동부의 직업안정국 산하에 형성되었다. 노동부 산하 장애인 고용전달체계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민간단체, 일반기업 등 할당제 의무고용 촉진정책 수행에 관련된 정부기관과 일반사업체로 구성되었다. 1990년 1월 30일자로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고용촉진법 시행 준비로서 장애인문제 전문가 파악, 장애인 유명인사 파악,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설립예산 확보, 고용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그리고 각계의 의견수렴 등 정책시안을

준비했다.

1990년 8월 1일에 한시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과를 설치하고 장애인고용촉진기획단의 업무를 인수하여 고용촉진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준비를 추진했다. 1991년 3월 25일 노동부 직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과를 해체하면서 직업안정국 소속으로 「장애인고용과」를 설치하고 고용촉진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고용정책을 수립하여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고용시책업무가 시작되었다(노동부, 1991).

장애인고용촉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1990년 9월 1일 노동부 산하에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 함)이 설립되어, 조사 연구,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 장애인 직업 훈련원 설립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필요사업 및 노동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 3항에서 규정한 일반고용의 의무고용사업체는 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국가기관, 국영사업체, 사회단체, 일반기업 등으로 구체화되었고, 1991년부터 일반고용 촉진정책이 시행된 이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의무고용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촉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3) 일반고용과 병행되는 중증장애인 직업 정책

2000년도에 들어 노동부 중심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반고용을 목적으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직업재활 과정에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직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추구하며, 중증·중복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직업지원정책을 지향하며, 만성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 직업활동 보장을 위한 고용형태의 다양화,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연계를 공고히 하고, 이와 관련된 전체 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노동부가 밝히는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취지이다(오길승, 2000).

특히 일할 의욕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타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4) 장애청소년 직업재활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직업재활은 학교에서 성인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행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청소년의 경우 정규 학교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직업생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남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생활과 여가활동 및 여러 가지 재반활동 및 직업활동에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에서 성인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은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사회나 직업에의 적응으로써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 변화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Daniels, 1987).

장애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성인사회로 활동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전환고용과 전환교육이다(이효자, 1999).

전환고용이나 전환교육의 최종 목표는 학교 졸업 후 직업생활로 전환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상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Wehman, Kregle, & Barcus, 1985).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개념을 첨가하여 취업을 위한 주변 사회환경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으며 지역사회적응은 질적인 주거환경과 사회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특수학교 등이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으로 규정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전환고용 혹은 전환교육은 중요한 실천과제로 부각되어 향후 발전적 전망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의 현 시점에서 그 실천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특수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주로 어느 일정한 직종으로 한계를 지음으로써 장애학생들에게 일방적 선택을 강요했을 뿐이다. 특히 직업 전문 훈련 과정의 특수학교 내 전공과는 한 특수학교의 전공과 졸업생 취업률이 0%라는 주장과 함께 시행 4년 만에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노윤미, 1999).

최근에 컴퓨터 등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관련 직종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목공이나 직물 등 사양산업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오히려 가로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성희선, 1999).

이런 시점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과정의 중요한 한 가지 주제로 부각된 전환서비스를 통하여 학교 장면에서는 장애청소년들에게 학업적 기술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과정보다는 장애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적 기술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과 자기보호(*self-advocacy*)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취업과 취업의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정동영, 1998)는 주장은 사뭇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은 단순한 직업훈련의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고, 직종을 선택하고 이에 맞는 직업 훈련 과정을 거쳐 향후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방향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시행한 장애청소년의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장애청소년 직업재활 모델로 제시하였다.

장애인 직업재활 중 장애청소년에게 진로·직업 탐색은 직업을 갖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 해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장애인 이직률은 70%를 웃돌고 있다²⁾. 그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업무나 인간 관계 등의 직업 현장에 대한 부적응에 기인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심각한 상황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직업현장으로 들어간 장애인에게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인 것이다.

한 개인이 자아를 발견하고 장차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돕는 진로·직업 탐색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프로그램 내용 중 중요도를 높이고 있다.

인생 가운데 직업생활은 많은 자리를 차지하며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만든다. 더구나 일을 통한 자아성취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들은 직업생활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파생된다.

또한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직업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해 결국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 장애청소년의 경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세계를 접하고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에 맞는 직업을 발견하고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 방향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장애청소년의 효

2) 이 자료는 국회 노동환경위원회가 다룬 200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에 근거한 것임

과적인 직업재활을 향해 사회가 할 수 있는 실천적 지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장애청소년의 진로·직업 프로그램

(1) 진로·직업 탐색 캠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삶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나 직업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장애청소년 진로·직업 탐색 캠프이다. 다면인성검사(MBTI)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선천적 성향을 통한 미래의 직업 세계를 알아보고, 온라인 상에서 직업 군을 찾아가는 작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소개된 직업 세계를 알아보며, 특히 장애를 가진 선배들과의 만남 혹은 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가 추진하였으며 2박3일간의 숙식을 함께 하며 서로의 문제의식을 나누어 자신의 진로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2)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및 전공과 운영

대부분의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청소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소 목공 등 사양 산업군 직업교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과과정 중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입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수학교는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학교 중 16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공과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의 직업재활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최근 전공과 폐지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3) 지원고용

최근 직업재활 과정 중에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고용이다. 지원고용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반 기업체에 취직한 이후, 출퇴근이나 작업 공정 과정에 관한 적응, 또는 직장 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등 사업장에서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명문화되었다. 법으로 명문화되기 이전에도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여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제도로 제도화되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기도 하다.

(4) 보호고용

보통의 작업 조건 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호고용이다. 이 프로그램도 1999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명문화되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래 전부터 이 프로그램도 장애인복지관 등지에서 실시해 왔으며 지원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활성화될 전망이다.

4.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장애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사회성을 획득할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해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다시 반사회화 되고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장애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한 수련활동프로그램은 후자에 관심을 갖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처하게 되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에 대한 절반의 이해에만 머무

를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인 장애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목표인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장애청소년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어릴 때부터 부모나 주위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왔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외면당하면서 성장한다. 그 어느 경우이든 장애청소년에게는 사회성 발달의 우선적 과제라고 볼 수 있는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그들과 같은 또래집단인 비장애 일반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쉽게 익숙해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청소년들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따라서 장애청소년들은 더욱 고립되어 제한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다. 특히 장애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하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 그리고 기회의 요소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많은 부분 배제되어 있어, 바람직한 자아를 인식하고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장애청소년들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사회로부터 유보당하고 있거나 소외당하고 있다. 그들은 일반 비장애인의 평가기준에 의해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되거나 혹은 부분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이러한 장애청소년에게 있어 재활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재활은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일반청소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능력,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방법인 것이다.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체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재활의 원래 의미는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간성 회복이다(전광현 역, 1999).

안병준 등(1984)은 재활이란 단편적이 아닌 전인적인 개념으로 장애인의 잠재능력에 대한 신뢰이고, 인간의 효용성과 적응성을 길러주는 것이며, 인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기실현을 위한 동기조성을 전제

로 하고, 인간을 만족시키고 생산적 생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까지 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 재활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능력의 제한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기 쉽다. 사회적 재활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완전참여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아무런 차별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그가 속한 사회문화를 공유하면서 가정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반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박옥희, 2000). 이러한 바탕 아래에서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애인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청소년 이해를 위한 수련활동프로그램은 사회적 재활의 관점에서 장애청소년이 사회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자신의 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련활동을 통해 일반청소년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피안의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생각하고 옆에 살면서 먼 이웃의 아픔과 가까운 주변의 귀찮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간에서 그냥 사람으로 인식함으로써, 때에 따라서는 미워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의식과 태도 그리고 자세를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도 나름대로의 개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편견에서 자유롭거나 속박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라는 것은 '나'와 동일한 다양한 구성원이 살아서 움직

이는 정신적·생활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불편해 보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와 개인 모두 자신과 함께 하는 이웃에 대한 존엄성을 철저히 공감하고 체험할 때만이 가능하며 장애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활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1) 장애청소년의 이해

(1) 장애 개념의 이해

장애인 이해를 위한 수련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과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국제연합총회 장애인 권리선언, 1975)을 말하는데, 산업화로 인한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스트레스 등의 증가로 인한 정신적 폐해의 증가와 노령화 등은 장애인의 수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천적인 장애 못지 않게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는 세 가지 관점에서 조망한다.

첫째는 기능과 형태의 장애이다. 장애인이 갖는 손상(*impairment*)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들이 갖는 사회적 불리함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장 유리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적 개입이 재활의 주된 내용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능력의 장애(*disability*), 즉 장애인의 개별적인 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신체적 장애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여 사회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적 장애(handicap)이다. 장애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불리를 표시하는 것이며, 사회적 인식과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청소년 수련활동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신체·심리·정서·행동을 이해하고,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을 탐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장애인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즉, 장애로 인해 장애청소년이 갖는 사회적 불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청소년에게 장애청소년의 능력과 기능에 대한 장애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지하게 하는 데 있다.

(2) 장애청소년의 유형과 특성³⁾

① 지체장애 청소년

지체장애 청소년은 신체적인 지체로 인해 인간의 발달 영역 중 중요한 부분인 신체의 운동발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다. 신체적 장애로 인한 행동범위의 제한으로 이들은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적게 갖게 되는 것 외에는 일반청소년과 거의 차이가 없는 편이다. 다만 뇌성마비 청소년인 경우에는 전 발달영역에서 지체를 보이는데 영속적인 운동기능 장애, 근육 약화와 무기력, 불수의적 동작, 경련, 자세의 불균형 등이 수반된다.

② 시각장애 청소년

시각장애 청소년은 공간의 이동, 특히 보행에 제한을 받아 운동기능이 뒤떨어지고 사회성발달이 느리다. 그리고 정보습득에 제한을 받아서 개념에 대한 발달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추상적 사고를 요하는 과제에서 뒤떨어진다. 그러나 후천적인 시각장애 청소년인 경우에는 다르

3) 장애청소년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부문은 대부분 박옥희(2000),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pp. 42~105 와 이종복 외(1998), 「현대 사회 청소년복지론」, pp.287~288 중에서 요약·인용하였음.

다. 이들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손가락의 촉각을 사용하여 사물과 사상을 인지하므로 이 부분은 매우 발달해 있다.

③ 청각장애 청소년

청각장애 청소년의 특징은 언어발달의 지체로 나타난다. 특히 말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된다. 따라서 사회성과 사회화의 과정이 늦지만, 인지발달은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 발달의 지체 때문에 일반청소년보다는 보편적으로 다소 뒤떨어지나 큰 차이는 없다.

④ 언어장애 청소년

청각장애처럼 의사소통의 주요 기능인 언어에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회성 발달이 늦다. 또한 인지발달이 언어에 의해서 촉진되는 만큼 인지발달에서도 다소의 지체를 보인다. 특히 청각장애와 함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발달이 지체된다.

⑤ 정신지체 청소년

정신지체는 개인적인 차이가 심하다. 대체로 이들의 현저한 특징중의 하나는 지적 발달 장애이며 언어의 지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지적 기능의 장애는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일에만 집착하여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유연한 사고력 없이 단지 자신이 성취했던 과거의 방법만이 유일한 최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임기응변으로 상황에 적절히 적응하는 일이 곤란하며 고정적인 방법을 고집하기도 한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⑥ 정신장애 청소년

우리나라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법에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만을 장애의 종류에 포함시켜왔으나, 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정신장애와 내부장애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그 동

안 정신질환자로 취급되어 장애라기보다는 질환의 측면에서 다루어온 정신장애를 장애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또한 인간의 몸 속에 있는 각종 장기에 장애가 있는 내부장애도 장애로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특히 정신장애의 경우는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역할과 기능 수행에 장애를 갖는다. 그 종류에는 정신분열증, 반복성우울증, 조울증, 망상증, 정신신경증, 인격장애적 증상 등이 있다.

2)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특징

(1) 수련활동의 개념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련활동의 개념 정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청소년 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학업, 복무, 노동의 고유활동 영역과 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인 임의활동 영역과 차별화하고 있다(이광호 외,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활동에 대한 활동의 주체, 활동방법, 학교 특별활동과 임의활동 영역과의 모호성 때문에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명확한 성격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장애청소년 이해활동이 수련활동의 주제와 목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된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서의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고자 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수련활동을 하기 위한 주제와 목적, 내용, 그리고 과정을 기술한 일련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이란 일정한 기관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

지 요구되는 내용의 선정과 조직, 지도활동 체제, 시설, 자원, 지원체계, 기간 등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이무근, 1994).

(2)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장애청소년'에 대한 일반청소년의 이해를 주제로 하여 새로운 청소년활동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청소년활동을 하나의 주제 또는 목적 아래 새롭게 구성·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은 원칙적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자에 의해서 기획·운용되는 집단적 과정을 갖는 성격의 활동으로 제한한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청소년의 개별 또는 집단 활동과 수련활동과의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셋째, 수련활동이 학교와 다른 활동현장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수련활동은 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구성된 프로그램(program)과 지도자(person), 그리고 현장(place)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청소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활의식을 높여주는 활동을 통한 '의도적인 변화노력'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규격과 규정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이념)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와 제10조(국민의 책임)에 선언된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 복지에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법적 선언에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프로그램으로서의 수련활동 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련활동의 독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폐쇄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나 청소년들의 임의활동 현장에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주제의 단계적 접근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청소년을 이해하는 특수한 주제에 대해서 청소년활동이 전반적으로 목적을 상실한 채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을 회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적인 대주제(goal)를 성취하기 위해 그 속에 포함되는 일련의 목표인 하위주제(objective)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의 단계를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각 단위 프로그램 활동을 흥미롭게 실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장애청소년을 이해하는 시각과 가치를 내면화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단계적이라는 의미이다.

3)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 지도자, 시설(장소), 프로그램의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한다. 청소년에게 장애의 이해에 관한 체계적 인식과 경험, 그리고 실행을 통해 수련활동 주제에 대한 수용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기초내용으로 하여 각 장애 영역별로 이해, 인식, 경험 그리고 실행의 단계적인 접근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의 세계

자기분석과 장애의 유형,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의 이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장애의 인식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통해 장애에 대한 자신과 사회적 인식의 고찰과 반성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3) 장애의 경험

장애청소년이 실제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생활내용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4) 장애청소년과의 생활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생활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4)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구성

(1) 구성의 원칙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수련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수련활동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하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수련활동이란 다분히 정책적으로 구조화하여 집단적이면서도 참여의 자발성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기관)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수련활동의 실행 교재 또는 준거로서 갖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체험의 결과를 지향하는 수

련활동을 인식의 틀로 담을 수 있는 체계화된 형태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하나의 주제를 내면화하거나 충실히 경험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는 목적달성의 개념과 각종의 전략적 단위활동을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이 단계적으로 주제를 경험하고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련활동의 구성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계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은 객관적 구성원칙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수련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제시한 다섯 가지 구성원칙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다.

① 목적지향성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다분히 목적지향적이다.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사회봉사 등 체험을 통해 덕과 체를 함양하기 위한 목적을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적을 명확히 하는 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일반청소년으로 하여금 장애청소년들이 갖는 곤란함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들에 대하여 갖는 사회적 편견을 직시하여 장애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수련활동을 통해서 습득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② 자발성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대부분 청소년지도자와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되어 청소년에게 제시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 청소년의 요구와 문화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선정과 실행과정에서 청소년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시되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안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담아낼 수 있다면 청소년이 수

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유인가가 되어 스스로의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발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흥미성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재미있어야 한다.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당수의 청소년이 학생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적 영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보다 체험적 성격이 강한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흥미성은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활동주제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전략적 과정이 된다.

여기에서 흥미성이란 자극적인 내용에 의한 흥미유발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다양한 활동기법을 통한 흥미유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흥미성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 방법은 놀이이다. 비록 놀이가 현대에 와서는 즐기는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더라도 놀이는 재미있는 것이다.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상상의 세계를 제공하며 원만하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또 놀이는 성인의 역할을 학습해 가는 사회화 과정의 기능 외에 언어체계의 기초 학습과 공동체적 삶의 규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긴장 및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 심리적 치료효과를 지니고 있다(한송희·구창모, 1994).

④ 체계성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순서를 의미한다.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조직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지만, 교육과정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다.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수련활동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주제를 만나고 체험을 통해 이해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주제를 새롭게 조망하고 창조하는 단계적인 활동체계를 지닌다. 따라서 활동내용은 계열화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단계

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체험적 영역이 심화되는 활동체계로 이루어진다(문화체육부, 1996 참고).

⑤ 의도성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의도적인 프로그램이다. 장애청소년의 이해라는 주제는 두 가지 목적을 상정한다. 하나는 비장애 청소년이 장애청소년을 심리·정서·사회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인간관계와 자아성장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흥미와 청소년의 요구 못지 않게 정책적 의도성도 중요하다. 즉,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 국가의 청소년육성 목표와 이념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며, 결과적으로는 수련활동의 실행 및 평가의 과정에 연결되어 나타나야 한다(문화체육부, 1996 참고).

(2) 프로그램의 구성 과정과 방법

① 목표설정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① 장애청소년의 이해, ② 장애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와 조정, ③ 장애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 그리고 ④ 장애청소년과의 대등한 상호작용 조성 등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는 활동과정을 통해서 달성되며, 궁극적으로 일반청소년과 장애청소년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다.

② 설계와 구성

가) 설계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단순히 하나의 실천적인 실행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활동의 주제와 형태를 제시하고, 활동의 결과에 대한 논의, 경험의 실행과 범주화를 보여주는 순차적이고 역동적인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내용과 활동과정을 순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일반청소년에게 장애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창의적 논의와 사회적 인식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재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통해서 얻는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바탕을 수련활동프로그램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나) 프로그램의 구성

(가) 구성 방법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장애청소년의 이해'라는 목표를 대주제로 선정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전략적 주제를 선정하되, 인식-이해-실행-평가의 구조로 구성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식(인식)-장애청소년 이해(이해)-장애경험과 장애청소년과의 활동(실행)-장애환경에 대한 평가(평가) 등으로 전략적 소주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소주제에 따른 활동방법은 소주제에 대한 목표와 활동내용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준비와 유의사항을 기술하여 하나의 단위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활동내용도 인식-이해-실행-평가의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프로그램의 대상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지도자들을 주요한 대상집단으로 한다. 청소년 스스로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운용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장애청소년에 대한 논의와 충분한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 활용방법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활용은 현장의 분위기와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식-이해-실행-평가의 단계적 순서로 되어 있으나, 청소년과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서 순서에 변화를 주거나 누

락시켜도 상관없다.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단계적인 접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논리적·심리적인 순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시되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활동내용과 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면 수련활동의 자발성과 체험, 그리고 창의적 특징을 더욱 바람직하게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실행 과정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수련활동을 전제로 한다.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은 장애청소년을 이해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다양한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형태로 유용성을 지니도록 실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활동이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의 전체를 나타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다면 프로그램은 ① 탄력성, ② 창의성, ③ 시의성, 그리고 ④ 성취성 등을 실행의 주요 요소로 삼아야 한다. 탄력성은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운용과 실천의 탄력성을 의미한다. 간혹 실천현장에서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현장의 여건과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활동형태만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부분 프로그램의 실천은 역시 현장의 몫이다. 따라서 현장의 지도자와 청소년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느냐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적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은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서 나타난다.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기본구성과 성격은 내용과 각종 형식을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위 프로그램도 구성원의 성격과 참여 방법 그리고 물리적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장애의 요건과 환경은 사회변화의 속도만큼 빠르게 변화한다. 따라서 시의 적절

한 내용의 선정과 그에 따른 목표의 성취는 청소년에게 일상생활 관련 활동 또는 다른 청소년활동과 괴리된 수련활동이 아닌 전체 활동을 포괄하는 수련활동으로 인식하여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취성은 참여 청소년의 관심도 및 수준과 일치한다. 장애와 관련된 환경을 경험한 청소년과 장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소년과는 성취단계와 수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이것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인간에 대해서 점진적 이해를 넓히는 것처럼 장애의 상황에 대해 단계적으로 체험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하나의 대단위 프로그램으로서 주제가 결정되고 그 주제 안에서 하위 프로그램들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실행됨으로써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전체 내용은 수련활동 운용에 따른 효과적인 결과의 도출은 물론, 각 단위프로그램의 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체적인 의도와 주제를 파악하고 연결되는 활동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편성은 인식-이해-실행-평가의 순차적 체계 안에서 하위 체계로 반복되어지는 나선형의 활동을 고려하여 실행과정을 구성한다.

④ 프로그램 평가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내용과 방법 그리고 준비 등에 대한 평가로, 목적하는 바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시켰는지 여부와 더불어 다른 하나는 지도자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과정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합리성 그리고 현장성에 대한 평가로 활동을 성취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의 구성과 체계가 바람직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지만, 진행 형태는 과정 또는 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각종 평가방법을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구성에서는 참고자료로 삼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V. 장애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2.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3. 프로그램 모형

IV. 장애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지난 수년 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과거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민사회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시대변화의 정신을 읽지 못하고 묵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마음은 아직도 과거의 각종 부조리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도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주역이며 내일의 주인공이다. 장애청소년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각종 활동에 뿔뿔이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만 맴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장애가 우리 사회의 통합에 방해가 된다면 장애인 은 영원히 사회의 주류 속에 동참하기 어렵게 되며, 따라서 사회통합이란 명제는 요원한 하나의 이상에만 머무르고 말 것이다.

장애인은 일반 시민과 뭔가는 다르다는 통속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대등한 위치를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인 ‘오토 다께’의 전기를 읽어본 사람이면 장애인이 소위 말하는 ‘정상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적이건 혹은 사회적이건 각종 장애를 이겨내고 자신의 성취를 이룩한 그의 용기에 대해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회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장애는 그들 스스로 얼마든지 극복하고 성취해 낼 수 있는 조금 불편한 조건일 따름이다. 그들을 가만히 내

버려 두라.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차별하지 말고 충족시켜 주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그들은 뭔가를 스스로 해 낼 것이다.

장애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는 달리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제약과 제한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장애가 있다 하여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일반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자기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누리고자 할 경우 국가는 이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 청소년기에 처한 장애인은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성이 크다.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는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장애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립청소년수련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실시함으로써 장애청소년의 자립과 재활을 돕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에게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결과가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에 근거하여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2.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늘 멀리받거나 소외당하면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차홍봉, 1993). 우리 전통사회의 장애인관을 엿볼 수

있는 각종 호칭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각종 속담에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끝말이 '이'나 '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장애인을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⁴⁾.

그리고 과거 임금들은 당시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때때로 궁궐에 불러모아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다⁵⁾. 장애인 일반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작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주는 문제에 부딪치면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회복지의 문제를 사람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人災)로 보지 않는 우리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이 계속되면서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전 과정에서 장애인을 더욱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이경동, 1985).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장애인관은 약자무시(弱者無視)의 전근대적인 사회적 관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민족 특유의 동질의식·완전인간의 지향 등

4) 안태윤은 우리나라의 속담 중 장애인에 대한 속담의 분포는 맹인에 관한 것이 48개, 병신이 7개, 앓은뱅이가 6개, 귀머거리가 5개, 연청이가 5개, 미친이(狂)가 4개, 곰배팔이가 1개, 바보가 1개, 뺨장다리가 1개로 되어 있다고 조사한 바 있다(안태윤, 한국인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논문집 제2집, 1969, p.80-88 참조). 그리고 장애인에 관한 속담에 나타난 편견에 대해서는 이규태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와 장애자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1, p.53-54 참조

5) 이 말은 「역사적으로 본 우리나라의 복지이념과 사회정책」이란 세미나에서 김상균이 토론을 통해 일년에 한번씩 청와대로 장애인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온정은 있으면서도 정작 제도적으로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은 없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임

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비장애인의 주관적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강경선, 1989). 인간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현대의 의학적·인간학의 통찰이기 때문이다(태교훈, 1988).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어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현장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장은 일반 교육현장과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리교육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같이 만날 기회가 적었다.

이러한 영향은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 서먹한 관계를 형성시키게 된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마스크를 통해 인식되어진 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장애청소년을 대할 때 그저 불쌍하게 보거나 어린아이 취급을 하게 된다. 친구로서 동료로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장애청소년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일반청소년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사회구조적으로 장애청소년을 독립성(*independence*)을 상실한 의존적(*dependence*)인 집단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영국장애인단체연합회(*The British Council of Organizations of Disabled People: BCODP*)가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특수교육의 문제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 제도야말로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졸업생들은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고착시켜 주는 대체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소외는 수동적으로 사회적 편견을, 그리고 사회 속에서 성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술습득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당대의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이 장애학생은 '영원한 어

린이'라는 신화를 낳게 했고, 장애인 졸업생들을 이러한 신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습득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되었다(Oliver, 1990).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일반아동과 다른 교육현장에서 자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작된 관계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 서로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청소년이 장애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올바른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

첫째,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자연스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에 일정 비율로 장애청소년이 꼭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 또는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장애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장애 체험 등 프로그램 삽입으로 장애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학교의 교과과정에 장애인 관련 단원이 삽입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비장애 등,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장애·비장애, 남성과 여성, 흑인과 백인, 학력, 다른 혹은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은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들의 공존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특히 공동체적 삶과 구성원간의 협력 및 조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다섯째,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세대, 즉 '청소년'이라는 기본적인 동질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런 동

질 의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동지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여기서 ‘자아 정체감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든, 비장애 청소년이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전제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일방적이고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아울러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스스로 장애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일곱째, 장애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 지역 시민단체, 장애인 단체, 청소년 회관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통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다.

3. 프로그램 모형

장애청소년 이해를 위한 일반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하였다. 여기에 제시한 모델 프로그램은 현재 활용중인 모델이거나 혹은 활용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구성한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수련시설 등지에서 재구성하거나 약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것은 장애청소년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수련활동 프로그램 등이다. 장애를 이해하고 이들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실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하며,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직업적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애청소년 가족지원 프로그램 모형

(1) 집단상담과 장애인 가족·형제를 위한 캠프

■ 사업명 : 개별 혹은 집단상담 및 장애청소년 가족·형제 캠프

■ 목 적

형제나 가족이 장애를 가진 청소년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더 건설적으로 잘 다스려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과 태도를 발전시키고 장애를 가진 청소년과의 관계가 친숙하게 유지되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 특히 가족지원으로 장애청소년의 가족 관계에 대한 지원을 도모코자 한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0년 1월~12월

□ 사업내용

- ① 가족, 형제, 또는 장애어린이 부모의 집단상담
- ② 캠프 2회(가족 캠프·형제 캠프)
- ③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합니다. 결과 발표회

□ 참가예정

- ① 집단 상담 45명(15명 기준 3회)
- ② 가족캠프 50명(4인 기준 10가구, 자원활동자 10명)
- ③ 형제캠프 45명(장애어린이 15명, 형제 15명, 자원활동자 15명)

□ 장 소 : 조용하고 아늑한 상담실 및 들과 강이 있는 한적한 곳

■ 프로그램 개요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의한 가족의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이로써 장애

청소년의 가족관계 형성에 대한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사업을 추진한다.

프로그램 특성	요 과
1단계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캠프를 하기 전에 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족 또는 형제에 대한 개별 상담과 장애 어린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통해 감정의 문제들을 들추고 풀어 가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캠프에 초대한다.
2단계 가족·형제 캠프	가족·형제 캠프는 주로 동일한 문제를 가진 가족 또는 형제들간에 상호 지지를 높여 문제 대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치료 이론과 문제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자조 집단 이론을 기초로 가족관계의 정상화 및 가족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결과 발표회	1·2단계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면서 달라진 가족관계 등을 발표하여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 사업대상 :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있는 가족 또는 형제 120명

■ 기대효과

- 장애인을 가족 구성원으로 둔 가족들의 올바른 가족관계 형성을 돕고 이들간의 화합을 도모
- 동일한 문제를 가진 가족 또는 형제들의 상호 지지 확대 및 문제 대응력 강화
- 올바른 가족관계 형성으로 장애청소년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존감 도모

■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례

♣ 상담 및 집단 상담

- 사업목적 :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 부모, 특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장애자녀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지 및 보완체계를 형성하여 원만한 가족관계를 이루도록 돕는다.
- 상담주제 : 가족과 나(부제 : 가정회복과 긍정적인 자기발견)
- 상담내용
 - 삶의 내용 나누기(글쓰기, 드라마, 역할극), 긍정적인 자기 표현하기
 - 몸짓을 통한 치유, 그림을 통해 자기 바라보기
 - 춤, 명상, 적극적인 사랑 표현하기
 - 가족 안에서의 나(play theater), 상대방 속에서 자기 찾기
- 상담방법
 - 대상 : 정신지체아 및 자폐아를 둔 어머니 7~10명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회수 : 매주 1회(화요일) 2시간씩 총 7회 진행
 - 시간 : 매주 오전 10:00~12:00
 - 장소 : 부드러운 분위기에 조용하고 한적한 방
- 사업담당 : 전문 상담가, 사회복지사 3명(장애아동을 돌봄)

♠ 가족·형제 캠프 프로그램 「동감 + 공감」

- 사업목적 :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개인을 가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가족사회 구조에서는 가족이 장애자녀로 인해 부담해야만 하는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등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장애아를 가진 가정의 원활한 기능은 장애아동의 발달과 장애의 사회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캠프를 통해 가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내에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 간에 상호적 지지도를 높여 문제 대응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부모들이 느끼는 장애아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자녀가 가족구성원의 일원임을 알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 부부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 장애아동에게 가족이라는 환경의 중요성을 부모가 알 수 있게 한다.
 - 부모모임의 계기를 마련한다.
- 주제 : 「공감 + 동감」
- 행사 개요
 - 대상 : 장애인을 가진 가족 (정신지체 및 자폐)
 - 인원 : 20가족 , 자원활동자 20명, 진행요원 8명
 - 기간 : 1박 2일

□ 행사 프로그램

<첫째 날 프로그램>

첫째 날	활 동		내 용
	부 부	자 녀	
3:00	모여주세요^^		가족지원센터로 모이기
3:30~4:00	출발		1,2조로 나누어 출발
4:00~5:30	도착		차안에서 소개하기, 숙소도착
5:30~6:30	반갑습니다.		집정리. 자기소개(강당)
6:30~7:30	맛있게 먹기		저녁식사(식당)
7:30~9:00	공동체 놀이	셋! 비밀이에요	부부, 자녀별 시간 (부부-강당/자녀-유스호스텔)
9:00~10:00	캠프파이어		신나는 캠프파이어!
10:00~10:30	씻기		자녀들은 재우기
10:30~	동감+공감		선배부모와의 만남

<둘째 날 프로그램>

둘째 날	활 동	내 용
07:00~08:00	상쾌한 아침	기상, 잠자리 정리, 세면
08:00~09:00	맛있게 먹기	아침식사
09:00~10:00	추억 만들기	가족별 시간
10:00~11:00	달는 마당	강당
11:00~11:30	정리하기	숙소정리
11:30~12:30	맛있게 먹기	점심식사
12:30~13:30	가을을 담아가요!	가족별 시간
13:30~15:00	집으로..	가족지원센터로 출발
15:00~	짧은 만남, 긴 여운	인사나누기

■ 결과 발표회

- 목적 : 개별상담 혹은 집단상담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규정하고, 장애인 가족·형제 캠프에서의 몸과 마음 풀기를 통해 가족관계에 대한 달라진 태도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 주제 :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 개요
 - 인원 :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
 - 시기 : 캠프 종료 후 1주일 이내
 - 장소 :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는 강당
- 행사 프로그램
 -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 보고
 - 발표와 토론 및 질의 응답

■ 프로그램 수행 인력

수행 역할	담당 부서 및 직위	관련경력
· 프로그램 지도 감독	기관장	10년 이상
· 프로그램 총괄, 진행	프로그램 진행 담당 부서장	5~10년
· 상담,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담당자	3~5년
· 상담, 프로그램 진행	대학원생 등 자원활동가/장애선배	2~3년
· 프로그램 개발·운영 위원회	전문가, 현장 근무자, 활동가 등 6인의 운영위원	
· 캠프 진행 보조	자원활동가 20명	1년 이상
·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전문가	6년
· 강연자	관련 학과 교수	5년
	관련 현장 근무자	5년
· 상담 지도자	전문가	10년

2)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모델

(1) 장애청소년의 진로·직업 탐색 프로그램

■ 사업명 : 장애청소년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

■ 목 적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청소년이 직업탐색의 기회를 갖고 자신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찾도록 한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0년 1월~12월
- 사업내용
 - ① 캠프 등 사업 준비
 - ② 캠프 2회
 - ③ 장애 선배의 직업 현장 방문
 - ④ 세미나 및 결과 발표회
- 참가예정
 - ① 장애 중·고생 60명(6모둠 구성),
 - ② 대학생 60명(6모둠 구성)
 - ③ 자원활동자 및 행사 진행 요원(20명씩)
- 장소 : 컴퓨터 시스템과, 숙식 제공 공간이 갖추어진 곳

■ 프로그램 개요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요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직업생활의 가능 여부다. 장애로 인하여 직업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장애청소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에 맞는 직업을 찾아냄으로써 희망적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프로그램 탐색	효 과
1단계 직업탐색 캠프 (나의 꿈을 찾아서)	캠프를 통하여 장애를 가진 여러 청소년을 만나고 연대감을 형성함으로써 미래의 협력자가 될 것이다. 직업에 대한 강연, 토론 등을 통해서 직업의 중요함과 다양성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자신의 흥미·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2단계 직업현장 견학	직업현장 견학을 통해 직접적으로 직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직업을 가진 선배 장애인을 만남으로 인해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에 맞는 직업을 발견할 것이다.
3단계 세 미 나	선진국의 장애인 직업,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직업 등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 사업 대상

대상구분	산 출 근 거
● 일반집단	● 전국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 위험집단	● 전국의 장애 중·고등학생, 장애 대학생
● 표적집단	● 프로그램에 응한 장애 중·고등학생 및 장애 대학생
● 참 여 자	● 프로그램에 응한 장애 중·고등학생 60명 ● 프로그램에 응한 장애 대학생 60명

■ 기대효과

프로그램의 실시로 장애청소년은 다양한 직업을 접하고 직업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희망적 미래 비전을 가지는 자존감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르는 장애인 직업 분야 개발, 장애청소년의 미래의 꿈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할 것이다.

■ 추진방법

- 전국의 일반학교(중·고교)와 특수학교에 참가할 장애청소년 모집 홍보
- 참가할 장애학생들을 초기면접을 통해 기초적인 직업에 관한 욕구 파악
- 장애인의 직업분야에 대한 상세한 정보집 등 홍보물 마련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
- 장애를 가졌어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자존감 함양
- 장애를 가진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미래의 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함
- 이후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장애청소년들의 연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례

♣ 캠프 프로그램 (부제 : 나의 꿈을 찾아서)

□ 프로그램 일정표

첫째날	
10:00~12:00	캠프장소 도착 및 식사
13:00~18:00	레크레이션을 통한 6모둠 나누기, 모둠 발표회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개인 오프라인 홈페이지 만들기
20:00~22:00	선배와의 대화(장애인 중 전문직종 종사자 3명) 후 취침
둘째날	
06:00~08:00	기상, 산책, 아침식사
08:00~10:00	성향을 통해본 내 흥미·내 적성
10:00~10:30	휴식
10:30~12:30	내 안으로의 여행(동료 상담 형식)
12:30~14:00	점심 식사 및 휴식
14:00~15:30	내 관심 영역을 찾아서(동료 상담 형식)
15:00~16:00	휴식
16:00~18:00	장애인 직업 분야에 대한 강연(2명) 및 집중 토론
18:00~19:00	저녁식사 및 휴식
19:00~22:00	모둠별 새로운 직업 개발하여 역할극 준비
셋째날	
06:00~08:00	기상, 산책, 아침식사
08:00~10:30	내 꿈을 펼쳐라!(소시오드라마-역할극)
10:30~11:00	휴식 및 평가의 시간(설문지 작성/대화)
11:00~13:00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13:00	폐회 및 시상식(우수 모둠, MVP) 집으로

- 장애 선배의 직업현장 견학(8월~10월)
 - 2개 모듈별로 2주에 한번씩 장애인 직업현장 견학(총 6회)
 - 선배들의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 세미나 및 결과 발표회(11월~12월)
 - 2개 모듈별로 2주에 한번씩 세미나(총 6회), 선진국의 장애인 직업(비디오시청), 인터넷에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서 발표하기. 직업에 대한 토론, 진로 준비 등

■ 프로그램 수행 인력

수행 역할	담당 부서 및 직위	관련경력
· 프로그램 지도 감독	기관 장	10년 이상
· 프로그램 총괄, 진행	프로그램 진행 담당 부서장	5~10년
· 상담,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담당자	3~5년
· 상담, 프로그램 진행	대학원생 등 자원활동가/장애선배	2~3년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위원회	전문가, 현장 근무자, 활동가 등 6인의 운영위원	
· 캠프 진행 보조	자원활동가 20명	1년 이상
·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전문가	6년
· 강연자	관련 학과 교수	5년
	관련 현장 근무자	5년
· 역할극, 동료상담 지도자	전문가	10년
· 선배 장애인	전문직종 혹은 일반직종 근무자	10년~15년

3) 장애청소년 이해를 위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1)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여기에 제시하는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앞에 나타난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특징과 내용 그리고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구안에 불과하다. 또한 단계적 연계성과 다양한 활동을 통한 주제의 접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수련활동 프로그램 실제 구성의 주요한 요소인 준비사항, 시간(기간), 장소, 평가항목 등은 생략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적용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 주제 :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

■ 목적 : 장애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을 통한 함께 살아가는 태도 함양

■ 프로그램 내용구성

- 자아인식 프로그램 : 누가 정상인가?
- 장애이해 프로그램 : 벽을 뚫고
- 장애경험 프로그램 : 시각장애 산책, 기다려 보아요
- 장애지원 프로그램 : 서로 도와요
- 사회통합 프로그램 : 함께 살아요

(2)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의 구성

앞에서 제시한 장애청소년 이해 수련활동의 적용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구성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에 걸쳐 전개하는 프로그램을 예시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는 지도자는 구체적인 활동목적에 따라 모형 프로그램의 전개 순서를 바꾸거나 다소 내용을 첨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첫 번째 모임 : 누가 정상인가? (자아인식)

■ 목표

- ▣ 집단성원간 친밀감 형성
- ▣ 집단성원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해
- ▣ 집단성원의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의 차이 발견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능력 비교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

■ 활동내용

예시 : 1

- ▷ 전체 구성원이 모여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2명씩 짝을 짓는다.
- ▷ 짝을 지은 사람끼리 서로에 대한 인상을 그림을 그리거나 기술한다.
- ▷ 그런 다음에 일정한 시간(약10분 정도)을 주어 상대에 대한 정보 (인적사항, 특기, 취미, 가치관 등)를 파악하도록 한다.
- ▷ 서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성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기 의 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소개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처음 에 상대에 대한 인상을 그린 그림이나 글을 성원 모두에게 보여 주면서 처음에 짝에게 가졌던 편견과 대화를 한 후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 성원이 모두 모여 편견과 선입관과 그리고 차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해 갖는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차별적 행위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 ▷ 토론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편견과 차별 사례를 성원이 함께 그림 을 그리거나 자료(신문, 잡지) 등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 등을 통해 표현해 본다.
- ▷ 장애인에 대해 성원 각자가 갖고 있었던 시각 또는 편견에 대해서 말한다.

- ▷ 장애인의 특성과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하는 예절 등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다.

예시 : 2

- ▷ 전체 성원들이 원으로 둘러앉는다.
- ▷ 지도자가 제시하는 하나의 단어에 대해 연상되는 단어나 문장을 짧게 언급하고 다음 성원은 앞서 제시된 단어나 문장을 반복한 후 이어 자신이 연상하는 단어나 문장을 말한다. 계속해서 다음성원에게 이어지면서 돌아가면서 반복한다

철수 : 음악

미연 : 음악, 아름다운 산과 들

기철 : 음악, 아름다운 산과 들, 맛있는 식빵

광호 : 음악, 아름다운 산과 들, 맛있는 식빵, 설악산

철수 : 음악, 아름다운 산과 들, 맛있는 식빵, 설악산, 제비꽃

미연 :

- ▷ 중간에 성원 중의 하나가 틀릴 때마다 풍선을 주고, 다른 성원들이 서로 도와서 계속 이어나간다.
- ▷ 전체 성원들이 3~4차례 반복해서 이어진 후, 가장 풍선을 많이 갖고 있는 성원이 전체 앞에 나와 자기가 하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한 가지씩 말하게 한다.
- ▷ 그런 다음, 집단성원 전체가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을 한가지씩 찾아내게 한다.
- ▷ 지도자가 마무리하면서 사람마다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성원 각자에게 잘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게 하며 박수를 쳐준다.

■ 유의사항

- ▷ 예시 1은 초기 집단구성을 전제로 과정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성원 상호간에 친밀감이 형성된 경우에는 예시 2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장애는 능력의 차해보다는 다수와 소수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알려주고 그에 따른 소수의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한다 : 역사적으로 장애인 소수가 당하는 차별을 당해왔다. 이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관련이 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편견의 산물인 낙인의 희생자가 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장애인은 신체에 장애를 나타내는 특수한 징표를 만들어 다녀야 했고,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에서는 마땅히 피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시대에도 형태를 달리하여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강한 공격성을 갖고 있다는 편견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격리시켜왔다.

■ 회피(avoidance) : 편견이 강하면 강할수록 싫어하는 사람과 집단을 피한다. 직접적으로 집단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대상에게 심리적 상처를 준다.

■ 차별(discrimination) : 편견이 행동화하는 것이다. 심한 편견은 차별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특정계층의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식당 등이 그것이다.

■ 폭력(violence) : 강한 차별적 행동은 폭력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 벽을 뚫고 (장애이해)

■ 목표

- 장애의 고통과 적응에 대한 이해
- 성원간 협동심 및 응집력 고취

■ 활동내용

예시 : 1(신체장애)

- ▷ 전체 성원을 2명씩 한 모듬으로 구성하여 한 사람은 신체장애인의 역할을 맡는다(청각·시각·지체 등).
- ▷ 모듬별로 일정구역을 정해 오리엔티어링을 하되, 5~6개의 포스트를 정해 과제를 부여한다.
 - ◆ 1 post : 비장애우가 장애우를 업고 50m 걸어가기.
 - ◆ 2 post : 상호 역할 바꾸기
 - ◆ 3 post : 숨겨진 보물을 찾기
 - ◆ 4 post : 큰 소리로 세 번 외치기
 - ◆ 5 post : 장애인의 역할을 맡은 성원이 짝의 도움을 받지 않고 100m 이상 가기
- ▷ 가장 성공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코스를 돌아온 모듬에게 시상한다.

예시 : 2(정신질환)

- ▷ 전체 성원이 모여 어두운 공간에서 녹음재생기를 통해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소리와 음악을 듣는다. 이 때 테이프에는 변화가 심한 음악과 망상에 빠진 정신질환자들이 흔히 언급하는 말을 녹음하여 준비한다. 예를 들어, '너는 신이다', '너는 이 세상을 구하

러 온 사람이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네가 아니면 구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을 조합하여 녹음한다.

- ▷ 전체 성원이 모여 사물이나 사람을 찍은 슬라이드 필름을 거꾸로 또는 옆으로 보여준다.
- ▷ 어두운 공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사진을 보았을 때의 느낌을 각자 솔직히 표현한다.
- ▷ 정신질환자의 특성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여 준다.

■ 유의사항

- ▷ 예시 1에서 오리엔티어링 장소는 비교적 위험한 장애가 없는 코스로 택하고, 특별히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 예시 1에서 오리엔티어링을 할 때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 ▷ 예시 2를 진행할 때는 정신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움을 받는다.
- ▷ 예시 2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녹음된 내용을 들려줄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 ▷ 가능하다면 예시 2의 과정을 마친 후, 심리극(*psychodrama*) 공연을 참관하도록 한다.

♠ 기다려보아요(장애체험)

■ 목표

- 장애 체험과 적응 경험을 통한 장애의 고충 이해
- 성원간의 특성 파악을 통한 협동심 증진

■ 활동내용

예시 : 1

- ▷ 일정한 공간(기관 또는 시설)에서 24시간 이상 성원들이 특정 장애역할을 맡아 생활한다.

※ 활동사항

- 1) 취침, 식사 등 일상생활
 - 2) 운동(축구, 탁구 등)
 - 3) 음악과 TV 시청 등 문화활동
 - 4) 주제토론(장애와 관련없는 주제)
- ▷ 그런 다음 특정한 장애(시각·청각·지체 등) 역할을 한 성원끼리 모둠을 구성하여,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어려운 상황 등을 토의한다.
 - ▷ 모둠별로 토의가 끝나면 '장애 이해'라는 주제로 각본을 작성하고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
 - ▷ 일정시간 동안에 촬영을 하여 영상물(비디오테이프)을 만든다.
 - ▷ 영상물을 편집한 후 전체 성원이 모인 자리에서 감상하고 토론한다.

예시 : 2

- ▷ 전체 성원이 모여 간단한 수화를 배운다.

- ▷ 성원 한사람씩 나아가 전체 성원 앞에서 간단히 배운 수화로 3분 동안 자기를 소개한다. 이 때, 어려우면 수화책 등을 참고한다.
- ▷ 매번 앞에서 발표하는 성원의 수화를 가장 잘 통역한 나머지 성원을 선발하여, 가장 잘 한 성원에게 시상을 한다. 또한 발표한 성원 중에서도 정확히 표현을 한 성원에게 상을 준다.

■ 유의사항

- > 일시적인 체형이지만 가능한 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여 장애로 인한 불편과 그 불편에의 적응과정을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 ▷ 장애체험을 하는 동안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 예시 1은 영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영상물을 창작하기 어려우면 사진이나 만화 등을 활용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시 2는 수화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서로 도와요(장애지원)

■ 목표

- ▣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 간의 상호협력 방안 모색
- ▣ 성원간의 협동심 증진

■ 활동내용

- > 성원 전체 모여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사회적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다.
- ▷ 지도자는 그림과 음악을 준비한다.
- > 지도자가 전체 성원을 두 모듬으로 나누어 한 모듬에게 그림 한 점을 제시하면 성원들이 그에 맞는 음악을 선정한다. 또 다른 모듬에게는 음악을 들려주고 성원들이 그에 적합한 그림을 선택하게 한다. 두 모듬간에 음악과 그림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활동을 멈추고 그 이유에 대해서 논의한다.
- ▷ 모듬활동이 끝난 후, 성원 각자가 음악을 듣고 상상의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보고 악기 등을 이용하여 음률을 만들어 본다.
- ▷ 전체 성원이 모여 가장 멋있게 음악과 그림을 결합시킨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 ▷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강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 유의사항

- ▷ 가능하다면 장애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 > 장애가 장점 또는 강점이 될 수 있는 데 대한 토의를 위해 지도자는 장애청소년 유형과 각 유형별 강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다.

◆ 함께 살아요(사회통합)

■ 목표

- 장애인(청소년)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한 상호이해
-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돕는 방법 습득
-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모색

■ 활동내용

- ▷ 전체 그동안 체험과 토론을 통해 배운 장애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퀴즈게임을 하여 가장 잘 맞춘 성원 3명을 선택한다. 선발된 성원 3명에게 장애인청소년복지기관(시설) 또는 장애청소년을 초대의 임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한다.
- ▷ 나머지 성원들은 장애청소년과 만나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 장애청소년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 ◆ 장애청소년과 성원과 '장애'를 주제로 토론한다. 이후 다른 주제 하나를 선정하여 장애청소년과 성원이 섞여서 한 모듬을 이루어 분임토의를 한 후 전체가 모여 다시 토론한다.
 - ◆ 장애청소년과 함께 게임과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하고,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 2인이 한 모듬이 되어 잠시 다과를 나눈다.
- ▷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 한 명씩 선발하여 시상하고 활동을 마친다.

■ 유의사항

- ▷ 시작하기 전에 장애청소년과의 만남이 비장애청소년이 장애청소년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해봄으로써 친구를 이해하고 집단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 가능하다면 성원과 같은 또래의 장애청소년 집단을 만날 수 있게 한다.
- ▷ 활동과정을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여 집단활동을 종료한 후, 모두 모여서 장애청소년과 함께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점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청소년 사회통합의 한 방법으로 비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청소년 이해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로 수행하였다.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은 비장애청소년이 장애청소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태도를 가지게 될 때 가능한 것이다.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앞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그 현상을 이루고 있는 사실(fact)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장애인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생기게 된다.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장애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정당성, 사회통합 운동 및 연구에 대한 결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가족지원, 직업훈련 및 재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이해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그리고 이해교육 프로그램에 담겨져야 할 내용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관련 전문가와 학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현장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에게 원고집필을 의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 제시한 내용은 장애청소년을 가족구성원으로 둔 가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이들 가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혹은 집단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장애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진로·직업에 대한 탐색과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동참하기 위해 반드시 비장애청소년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기본 모델 프로그램이 각각 개발되거나 소개되었다. 특히 가족지원과 캠프활동,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 탐색, 그리고 수련활동 등의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신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아인식 프로그램인 '누가 정상인가?', 장애이해 프로그램인 '벽을 뚫고', 장애체험 프로그램인 '시각장애 산책, 기다려 보아요', 장애지원 프로그램인 '서로 도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함께 살아요'라는 단계별 프로그램은 완벽히 개발하여 즉시 실용가능한 수준의 프로그램 단계는 아니지만 매우 흥미있는 통합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출현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근거하여 추측할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전국적으로 약 400만 명 이상이며, 특히 청소년 연령의 장애인이 약 40여 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기 때문에 이들 소수 소외 계층의 불이익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비록 미미하여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기초연구에 이어 장애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그리고 장애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우리 사회에서 유용한 인적 자원인 청소년을 현재의 주역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밝게 자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건강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무더운 여름날 학교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땀을 식히거나, 늦가을 낙엽 아래에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이들의 풍요로운 미래와 깨끗한 생활 환경을 위해 산이나 강을 보전하고, 산책로를 만들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청소년이 마음껏 뛰노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청소년회관, 문예회관, 구민회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학교운동장이나 학교시설 및 장비 또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참다운 일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자랑할만한 어른들에 대하여 공부하고 운동회와 학교 축제를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학교의 공간과 시설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을 오늘의 주인공이요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40만 장애청소년들도 일반청소년에게 거는 기대와 같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오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앞에서 여러 번 지적하였듯이 장애청소년은 비장애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청소년들이 장애청소년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환경의 변화와 조작을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습을 위한 사회 환경의 조성과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는 유목적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이번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그것은 비장애청소년이 먼저 장애청소년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해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자들은 비장애청소년이 장애청소년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단위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장애청소년이 일정한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청소년회관이나 구민회관과 같은 지역사회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장애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을 동원하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관련하여 특수분야 지도를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는 현행 기본법상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도를 위해 국가에서 양성하는 최고의 지도자들이다. 이러한 지도사 양성에 있어 정부는

장애청소년과 같은 특수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 양성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유도함으로써 장애청소년이 비장애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을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장애청소년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정부의 5·31교육개혁 정책에 따라 청소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탄생된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인성과 덕성을 기를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속에 비장애청소년과 장애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할당해 주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지장애청소년이 장애청소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정보네트워크 형성에 장애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정보화의 침범으로 청소년 인터넷 자원봉사단 구성에 장애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과 게임, 학습자료 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정보나 청소년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자원봉사단을 육성·지원한다면 장애청소년들도 지역사회

회의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육에 있어서는 장애청소년의 통합교육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교육내용의 재구조화를 보장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통합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면 일반 교과과정에 장애청소년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단원이 들어가야 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수화와 점자를 배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화와 점자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 이해할 수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하여 장애청소년들과 일정한 기간을 함께 지내는 프로그램을 학교 차원에서 실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래 청소년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일년에 한 차례 정도라도 실시해 보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특히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장애청소년의 활동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립이나 혹은 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법적 혹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비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시설에서의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은 통합 프로그램 성격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련활동 프로그램마저도 장애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장애청소년의 사회통합 경험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선(1989). 장애인문제에 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 복지법제, 법무자료 제 122집.
- 강 웅(1997). 장애아 가정의 가족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강위영(1991). 장애인 직업재활대책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 강위영 외(1992). 장애인 직업적응을 위한 재활방법, 서울 : 성원사.
- 강위영 · 박양신(1997). 장애유형별 직업선호경향 비교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7권.
- 강위영 · 김재익(1998). 직업윤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직업재활에의 시사점. 직업재활연구 제8권.
- 교육부(199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1999년도 정기국회 보고자료.
- 구본권 외(1997). 특수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 국립특수교육원(1998a). 한국의 특수교육지표. 국립특수교육원.
- _____ (1998b). 장애인 교육·복지실태 국제비교. 국립특수교육원.
- _____ (1998c).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 조사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권도용(1995). 장애인의 재활복지, 서울 : 홍익제. 32~39.
- 권선진 외(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요한 외(1999). 특수교육학 서설, 서울 : 교육과학사.
- 김동연(1998). 장애아 어머니 가족 스트레스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인암 조일묵선생 명예박사학위수여기념논총 발행위원회.
- 김명선(1987). 정신지체아 형제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김삼섭(1996). 함께 사는 사람들, 국립특수교육원.
- 김영미(1989).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연구, 석사

- 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영민(1992). 장기 장애인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기능 비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종인(1988). 장애인복지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정책세미나자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김형식(1997). 호주의 최근 장애정책. 서울 : 일진기획.
- 김효선(1999). 전환교육: 미래 지향적인 사회복지 계획.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마들대학 자료집.
- 노동부(1991). 노동백서. 노동부.
- 노윤미(1999). 전공과 대수술이 필요하다, 함께 걸음 5월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 _____ (1999). 청소년백서.
-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수련거리 개발지침서. 문화체육부.
- 박민경(1996). 장애형제를 둔 정상 형제 자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박영균(1997).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회지, 제18집 제1호, 대한특수교육학회.
- 박영균 외(1999).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옥희 외(1994). 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옥희(2000).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문사.
- 배광웅(1986). 장애 가정의 재활을 위한 구조적 가족치료를 위한 접근 연구, 사회복지학회지 제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보건복지부(1995).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_____ (2000).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보건복지부.
- 보건사회부(1985). 보건사회백서. 보건사회부.

- _____ (1986). 보건사회백서. 보건사회부.
- 서동명(1999). 발달장애청소년과의 통합활동 경험을 통한 일반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성희선(1990). 장애자의 전인재활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_____ (1999). 예견된 실패: 특수학교 전공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송경선(2000).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 능력 부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안병준·강소영·우재현(1984). 장애자의 직업재활. 서울: 형설출판사.
- 안태윤(1969). 한국인의 전통적 장애인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 한국사회사업대학.
- 양숙미(1998). 성인정신지체인 가족의 능력고취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2호.
- 오길승(2000). 장애우 직업재활 정책, 장애우정책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유애란·김종인(1999). 전환고용의 이념적 고찰. 장애인고용 가을호.
- 이경동(1985).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적고찰,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무근(1994). 프로그램의 설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성기(1996). OECD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사회복지부의 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현(1999). 가족참여를 위한 지원 및 중재. 현장특수교육 가을호.
- 이준우 편(1999). 장애인과 지역사회. 한국말알선교단 출판부.
- 이효자(1999). 전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자립을 꿈꾼다, 장애인고용 가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전광현 역(1999). 사회복지신학(아키이에, H. 니노미야 저), 예영커뮤니케

- 이선.
- 전재희(2000). 국정감사 자료집, 노동환경위원회.
- 정기원 외(1996).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동영(1998). 전환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전환교육연구회 세미나자료, 전환교육연구회.
- 지민희(2000). 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서(1996년~2000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차홍봉(1993). 역사적으로 본 우리나라의 복지이념과 사회정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심포지엄.
- 태교훈(1988). 철학적 인간학에서 본 정신건강의 의미, 실학전망 제81호.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1). 일본의 장애인 고용과 취업.
- 한승희·구창모(1994). 청소년수련거리개발 기본계획(Ⅰ). 한국청소년개발원.
- 현 숙(1994). 장애어린이 가정의 가족기능향상을 위한 집단가족지원서비스 개발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회.
- Albrecht, G. L. (1997). *The Disability Business*. Saga Library of Social Research 190 International: SAGE publications 285~288.
- Behr, S., Murphy, D., and Summers, J. (1992). *User's Manual; Kansas Inventory of Parental Perceptions*. Lawrence, KS: The Beach Center on Families and Disability. The University of Kansas.
- Benson, H. (1992). *Literature review: Stress, coping, and respite care in families with members with disabilities*. Lawrence, KS: The Beach Center on Families and Disability, The University of Kansas.
- Daniels J. L.(1987).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R. M. Parker (Ed), *Rehabilitation counselling; Basics and beyond*. pp. 28

- 3~317. Austin, TX: PRO-ED.
- K. Girdner & B. K. Eheart(1984). *Mediation with Families Having a Handicapped Child, Family Relation*, 33, 1984, pp. 187~194
- Lehr, D. H. & Brown, F. (1996).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Challenge the System*, International: Paul, H. Brookes, 131~157.
- 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1994). *That All May Workshop, An interfaith welcome to people with disabilities*. USA, 1~45.
- Szymanski, E. M. & Parker, R. M. (1993). *Rehabilitation Counseling*, Texas: pro ed. USA, 103~133.
- Turnbull, A., Patterson, J., Behr, S., Murphy, D., Marquis, J., and Blue-Banning, M.(1993). *Cognitive coping, families, & disability*. Baltimore: Brooks. (Provides perspectives from researchers, theorists, service providers, and families on cognitive coping and disability).
- Wehman, p., Kregle, J., & Barcus J. M. (1985). *From school to work: A vocational transition model for handicapped students*, *Exceptional Children*, 52, 25~37

부 록

1. 장애인복지법(신)
2.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1. 장애인복지법(신)

(전문개정 99. 2. 8 법률 제593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1.1]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시행일 2000.1.1]

제3조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시행일 2000.1.1]

제4조 (장애인의 권리)

-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시행일 2000.1.1]

제5조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 ① 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7조 (보호자에 대한 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의 부모 및 배우자 기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사후에 장애인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8조 (차별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10조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11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 ①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12조 (장애인의 날)

- ①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대통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14조 (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2장 기본시책의 강구

제15조 (장애발생예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16조 (의료·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17조 (사회적응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 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18조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19조 (직업재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적합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20조 (정보에의 접근)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뉴스,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기타 교육, 집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 및 민간행사주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21조 (편의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22조 (안전대책의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 청각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 안내판의 설치, 긴급 통보시스템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23조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24조 (주택의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25조 (문화환경의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26조 (복지연구 등의 진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와 장애인 복지진흥, 장애인 체육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체육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복지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③ 복지진흥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진흥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복지진흥회에 기부된 재산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시행일 2000.1.1]

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3장 복지조치

제28조 (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연마다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29조 (장애인 등록)

-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당해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인단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장애인단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인단 및 장애인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30조 (장애인복지상담원)

- 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31조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애인의 가정, 장애인이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32조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33조 (의료비의 지급)

- ①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34조 (자녀교육비의 지급)

- ①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35조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 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식별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이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36조 (장애인보조건의 훈련·보급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건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건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건표지(이하 '보조건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37조 (자금의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38조 (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을 제조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 장애인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39조 (자립훈련비의 지급)

①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

애인복지시설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 및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40조 (생산품의 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 물량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한다. [시행일 2000.1.1]

제41조 (고용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42조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43조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에게 국·공유 토지 및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및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44조 (장애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의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45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의 지급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46조 (재활의 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재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4장 복지시설 및 단체

제47조 (보호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지권을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치료,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49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은 의료법에 의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50조 (시설운영의 개시 등)

- 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설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시설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 및 이의 이행여부확인
 - 2. 이용료, 사용료 등 비용을 시설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의 반환조치 및 확인
 - 3.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의 회수조치
 -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폐지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51조 (감독)

- ①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5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 [시행일 2000.1.1]

제53조 (단체의 보호·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5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5장 재활보조기구

제55조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시행일 2000.1.1]

제56조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품목을 고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57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58조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하 ‘재활보조기구업체’라 한다)에 대한 생산장려금의 지급·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보조기구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자금의 용자와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59조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60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 등)

- ① 의지·보조기의 제조·개조·수리 또는 신체에의 장착을 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의지·보조기제조업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기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의지·보조기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61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폐쇄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때
 2.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은 받은 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6장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제62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 및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63조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②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③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절차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64조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국가시험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65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의료보험법·의료보호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마약법·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행일 2000.1.1]

제66조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시기·실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67조 (자격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그 업무를 행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받은 때 [시행일 2000.1.1]

제68조 (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지·보조기기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시행일 2000.1.1]

제69조 (수수료)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거나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7장 보칙

제70조 (비용의 부담)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71조 (비용의 수납)

- ①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 ②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72조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73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0.1.1]

제74조 (조세의 감면)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시행일 2000.1.1]

제75조 (심사청구)

-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8장 벌칙

제7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7.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한 자
 8.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 [시행일 2000.1.1]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지원 거부 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한 자

2.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자 [시행일 2000.1.1]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2000.1.1]

제80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의복지 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5.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보조기제조업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0.1.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이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 ②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법 시행후 6월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장애인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은 제29조의 개

정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특례)

이 법 시행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은 제63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2000년 7월 현재)

1. 시설 일반현황

(단위 : 개소)

시도	계	지체	정신지체	시각	청각·언어	요양
계	193	38	64	11	14	70
서울	28	4	8	2	1	13
부산	17	7	6	1	2	2
대구	10	4	2	-	-	4
인천	9	2	3	1	1	2
광주	9	2	3	1	1	2
대전	7	1	2	1	1	2
울산	2	-	-	-	1	1
경기	30	3	11	-	3	14
강원	9	1	4	1	-	3
충북	14	1	4	2	1	6
충남	10	2	3	-	-	5
전북	12	4	3	1	1	3
전남	11	3	3	1	1	3
경북	14	3	4	-	-	7
경남	10	2	6	-	1	3
제주	1	-	1	-	-	-

2. 시설생활자 일반현황

(단위 : 명)

시도	계		지체		정신지체		시각		청각·언어		요양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20,383	16,992	4,201	3,288	6,169	5,838	1,043	676	1,434	913	7,598	6,448
서울	3,439	2,950	595	429	855	821	215	140	62	48	1,712	1,512
부산	1,742	1,476	592	560	741	642	95	19	144	123	291	180
대구	1,345	1,292	621	558	337	355		-		-	387	391
인천	860	639	180	121	320	297	100	51	100	24	160	146
광주	951	708	320	148	232	249	100	41	128	99	170	171
대전	876	642	120	103	335	293	70	69	214	41	137	137
울산	250	234	-	-	-	-		-	60	32	190	202
경기	3,020	2,519	318	242	964	890		-	216	110	1,518	1,371
강원	619	550	119	109	180	161	100	67		-	220	208
충북	1,677	1,511	160	103	496	475	210	166	180	141	631	626
충남	1,167	1,015	229	182	501	477		-		-	363	356
전북	882	675	320	195	200	128	50	46	160	145	152	152
전남	828	739	190	164	265	272	103	77	80	43	190	183
경북	1,210	1,081	257	189	410	398		-		-	543	494
경남	1,477	922	180	185	293	341		-	90	107	934	319
제주	40	39	-	-	40	39		-		-		

3. 지역별 시설현황

< 서 울 >

○ 정신지체인 생활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인강원	이묘화	1968.11.29	02)955-0526	도봉1동 381-1
	인강원	구자성	1979.1.28	02)3493-0520	
2	다니엘복지원	김성언	1955.7.6	02)445-4892	내곡동 1-1328
	다니엘	이종관	1955.7.6	02)3411-2420	
3	동천의집	성선경	1961.8.1	02)974-9577	하계동 288-1
	동천의집	이병열	1957.9.28	02)978-4288	
4	우성원	김종수	1968.5.20	02)428-0870	고덕2동 298
	우성재단	최병문	1972.5.20	02)427-3523	
5	은평재활원	윤경숙	1981.3.26	02)385-2046	구산동 191-1
	은평천사원	김영현	1961.5.10	02)356-5650	
6	신아재활원	한월섭	1975.7.7	02)400-4695	거여동 251-23
	신아원	황성수	1957.7.30	02)407-1957	
7	교남소망의집	황규인	1982.6	02)2602-3880	화곡 6동 960-22
	교남재단	전택부	1957.8.12	02)2606-6416	
8	임마누엘재활원	김경식	1993.2.10	02)407-0067	거여2동 251-40
	임마누엘 사회복지법인	김경식	1993.8.12	02)403-1929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맹인대리원	김원재	1973.6.25	02)939-2298	상계동 1131-41
	홍파복지원	홍영기	1973.5.16	02)938-6930	
2	한빛맹아원	반순자	1968.7.4	02)989-6017	수유1동 484-21
	한빛재단	김봉룡	1968.7.4	02)945-9650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삼성농아원	정명규	1957.3.2	02)823-2234	상도동 211-121
	삼성농아원	정명규	1967.6.28	02)823-2236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석암재활원	김성숙	1982.1.12	031)987-9324	김포시 대곶면 울 생리 472-4
	석암재활원	홍순자	1981.10.21	031)987-7909	
2	천애재활원	허 홍	1957.8	02)930-4635	중계동 308-3
	천 애 원	허 홍	1957.8.30	02)952-9474	
3	주몽재활원	장선옥	1985.4.1	02)427-9734	상일동 179
	주몽재단	장선옥	1958.1.31	02)481-1371	
4	삼육재활원	정창곤	1952.6.12	031)761-3636	경기 광주 초월 지월 729-6
	삼육재활센터	민군식	1952.6.12	031)763-6567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제복만	1986.1.1.	031)981-0909	김포시 양촌 양곡 490
	석암재단	홍순자	1981.10.21	031)981-6985	
2	석암베데스다 아동요양원	박옥경	1996.11.8	031)981-0908	김포시 대곶 읍생 472-5
	석암재단	홍순자	1981.0.21	031)981-7909	
3	영락애니아의집	박창석	1994.7.28	02)754-8507	후암동 370
	영락사회복지재단	지선장	1957.10.1	02)752-2516	
4	쉽터요양원	김원재	1990.7.25	02)937-5057	상계동 1131-41
	홍파복지원	홍영기	1973.5.16	02)938-1917	
5	상락원	조광환	1998.6.1	02)921-6410	안암5가 10-1
	송가원	박재근	1996.2.6	02)921-6416	
6	은혜장애인 요양원	강완흠	1995.3.16	033)452-6161	강원 철원 갈말읍 문혜리 산 36
	성람재단	조태영	1984.2.17	033)452-6163	
7	늘편한집	허 흥	1999.2.25	02)933-5228	중계동 308-3
	천애원	허 흥	1957.8.30	02)952-9474	
8	우성장애인요양원	김종수	1993.10.5	02)428-0871	고덕2동 298
	우성재단	최병문	1972.5.20	02)427-3523	
9	암사재활원	김세용	1992.6.1	02)441-0407	암사3동 196-1
	대한사회복지회	임채홍	1954.1	02)427-9315	
10	문혜장애인요양원	강병호	1992.1.8	033)452-7881	강원 철원 갈말 문혜리236-1
	성람재단	조태영	1984.2	033)452-3260	
11	라파엘의집	정지훈	1991.2.28	031)883-6637	경기 여주 북내 중암리 산 48-8
	하상복지회	김경무	1989.1.18	031)883-6639	
12	한사랑마을	김종우	1988.5.20	031)764-2115	경기 광주 초월 신원리 산 5-1
	한사복지재단	조종남	1955.10	031)761-7646	
13	한사랑장애인영아원	이효숙	1997.5.20	031)764-2115	경기 광주 초월 신원리 산 5-1
	한국복지재단	조종남	1955.10	031)761-7646	

< 부 산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천성재활원	윤경옥		051)413-4448	영도구 청학동
	천성아동재활원	윤영배	1961.2.6	051)418-4418	57번지
2	신애재활원	박상근	1951.3.1	051)816-9128	부산진구 초읍동
	신애재활원		1951.3.1	051)816-9137	525-1
3	성프란치스코의집	임태호	1995.2.27	051)622-1652	남구대연3동 390
	(재)폰벤뚜알프란 치스교수도회	박영호	1968.3.25	051)622-1625	
4	소화영아재활원	김정순	1982.8.16	051)644-1729	감만1동 491-1
	(재)천주교성바오 로수녀회	이귀순	1980.3.6	051)644-0272	
5	영광재활원	임성희	1965.3.5	051) 523-5451	해운대구 반여1동
	동래원	임영호	1958.11. 8	051) 523-5414	1062-32/5
6	아이들의 집	조은희	1988.12.10	051)542-5980	반송2동 614번지
	(재)영원한도움의 성모회	김숙자	1967.02.02	051)542-4077	
7	양지재활원	신익균	1974.8.22	051)503-6001	거제2동801-89
	양지동산	한수명	1973.12.8	051)505-1439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실로암의집	임성순	1991.12.16	051)316-1338	주례2동 239
	읍의마을	박인근	1965.1.6	051)325-1838	
2	동연요양원	김재영	1990.10.24	052)263-6466	울산 울주 두동
	동 향 원	김옥남	1986.7.15	052)263-6637	천전 315-1

○ 정신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천마재활원	박근련	1996.7.7	051)247-4084	암남동 산 13-5
	천마	황선무	1996.7.7	051)255-6951	
2	애리원	주경중	1977.4.8	052)264-013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539-8
	한서기독교재단	박정환	1977.1.28	052)264-0139	
3	동원재활원	김재영	1986.10.27	052)263-6465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315-1
	동향원	김옥남	1986.7.15	052)263-6637	
4	성우원	김창숙	1965.2.25	051)759-9211	연산 9동10-50
	성우원	목혜수	1964.12.5	051)752-3205	
5	해성원	김완규	1987.8.31	055)382-2818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572-7
	해성원	황필란	1986.6.25	055)383-4332	
6	평화의집	최무경	1965.1.12	051)331-4344	북구 화명동 254
	평화의집	최무경	2000.4.24	051)332-6310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부산라이트하우스	이성일	1955.10.15	051)256-3096	암남동 180
	부산라이트하우스	김경자	1974.11.21	051)256-3519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선아원	임경설	1978.3.11	051-582-0089	장전2동 산 38-6
	선아원	송광호	1959.8.6	051-515-8108	
2	베데스다원	유옥주	1967.08.29	051-971-0330	대저1동 393-20
	베데스다	김상철		051-971-0382	

< 대 구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 설 장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애 망 원	박헌철	1980.6.1	053)763-7363	수성구 과동13
	애망원유지재단	정순모	1952.1.6	053)763-7362	
2	청구혜양원	김인호	1957.10.29	054)852-0423	경북 경산시 와 촌면 소월리 109
	청구혜양원	김병진	1957.10.29	054)852-8570	
3	대구안식원	김경배	1959.6.4	053-381-1560	북현2동 45번지
	선산복지재단	김명식	1959.1.17	053-384-5213	
4	성보재활원	최옥순	1952.9.15	053-941-8328	북현2동 315번지
	성보재활원	김영수	1952.9.15	053-944-1173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 설 장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일심재활원	박강수	1962.2.12	053)963-3927	각산동 896번지
	일심재활원	이문희	1962.6.29	053)962-2912	
2	자유재활원	최귀희	1979.11.18	053-791-0812	수성구 시지동 28-1
	선명복지재단	강영신	1945.8.17	053-791-4239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 설 장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천혜요양원	김인호	1992.9.23	054)852-0423	경북 경산시 와 촌면 소월리 109
	청구혜양원	김병진	1957.10.29	054)852-8570	
2	선명요육원	강영진	1989.12.22	053-791-0813	수성구 시지동 28-1
	선명복지재단	강영신	1945.8.17	053-791-4237	
3	인제요양원	조만섭	1961.2.13	053)752-4966	수성구 수성4가 1225-2
	인제재단	조경섭	1961.2.13	053)743-9248	
4	애망요양원	박헌철	1995.5.19	053)761-5980	수성구 과동 13번지
	애망원유지재단	정순모	1957.1.20	053)763-7362	

< 인 천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은 광 원	이은수	1976.06.01	032)501-0105	부평구 부개1동
	은 광 원	이수영	1976.06.01	032)525-6033	347번지
2	성린직업재활원	김영주	1971.05.17	032)422-0573	부평구 십정2동
	성린직업재활원	김용해	1957.06.16	032)433-2572	586-2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명 화 원	-	1980.11.15	032)574-0250	서구 석남3동
	명 화 원	최형숙	1960. 5.13	032)574-0255	491-1
2	장봉해립재활원	임성만	1985.01.17	032)889-8051	옹진군 장봉리
	백십자사	임성국	1957.01.14	032)889-8128	105-1
3	예 립 원	장영순	1982. 2.1	032)503-8516	부평구 부평6동
	손 과 손	장영순	1982. 2.1	032)525-6044	633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광 명 원	임남숙	1958.01.06	032)522-8344	부평구 십정동
	광 명 학 원	임남숙	1960.4.1	032)511-8344	184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성 동 원	정 현	1953.09.21	032)522-2984	부평구 부평2동
	성 동 원	김재실	1956.05.02	032)515-8340	756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명 심 원	윤옥선	1991.06.03	032)817-2070	연수구 동춘1동
	인천다비다원	윤호중	1957.12.12	032)818-0011	산55-4
2	장봉혜림요양원	임성만	1998.05.13	032)889-8051	용진군 장봉리
	백십자사	임성국	1957.01.14	032)889-8128	105-1

< 광 주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행복재활원	정운영	1957. 4.22	062)225-1656	동구 학동 280
	동산보육회	정숙현	1956.12.27	062)228-3533	
2	보람의집	이태환	1998.7.16	062)944-2506	광산구 덕림동 15
	태 환 원	이태환	1996.6.25	062)944-2817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소화천사의집	이영희	1997. 5.20.	062)675-4020	봉선2동 52
	소화자매원	조철현	1985 3. 16.	062)675-0805	
2	백선바오로의집	이태정	1958.4.24	062)943-3300	삼거동 산50-4
	백선사회봉사원	이귀순	1992.5.22	062)943-3100	
3	귀일민들레집	복은순	1999.10. 1	062)654-0576	봉선2동 132-20
	귀일원	오복한	1985.2.24	062)654-0577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광주영광원	김명숙	1962.12.31	062)373-5551	덕흥동 953-2
	금 정	김택용	1962.12.31	062)373-5551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광주인화원	임창완	1963.4.1	062)943-0232	삼거동 603-1
	우 석	김택룡	1962.12.31	062)944-6165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행복요양원	박운택	1990. 3.15	062)225-1656	동구 학동 280
	동산보육회	정숙현	1956.12.27	062)228-3533	
2	새 광 원	김행자	1992.6.10	062)943-5416	덕림동 산140
	새 광 원	김영주	1990.4.9	062)943-0350	

< 대 전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성세재활원	박이영	1962.8.20	042)543-2121	유성구 용계동 319-3
	성재원	남시균	1965.3.30	042)543-2123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한뜻마을	김정기	1995.9.28	042)585-3342	장안동513-1
	한 마 음	유광운	1988.12.1	042)582-7582	
2	온달의집	송명호	1968.12.1	042)625-3005	대화동 39-1
	천성원	김병화	1968.12.1	042)621-4425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한마음복지원	유광협	1989.12.21	042)585-0781	장안동 513-1
	한마음	유광운	1988.12.1	042)582-7582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정화원	송명호	1963.9.16	042)624-3008	대화동 39-1
	천성원	김병화	1968.12.1	042)621-4425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한몸요양원	김정기	1992.10.14	042)583-4472	장안동 513-1
	한마음	유광운	1988.12.01	042)582-7582	
2	평강의집	윤진순	1996.1.1	042)625-3007	대화동 39-1
	천성원	김병화	1968.12.1	042)621-4425	

< 울 산 >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메아리동산	송창길	1981.1.15	052)295-9069	중산동 492-2
	메아리복지원	김진규	1980.11.13	052)295-9069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태연재활원	이동성	1988. 2. 17	052)298-3701	북구 산하동 161-1번지
	태연학원	이연숙	1987.11.12	052)298-6939	

< 경 기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명회원	안순녀	1971.5.5	031)406-1134	사동 1273
	명회원	김숙자	1967.11.14	031)406-9538	
2	우주	김순암	1989.7.21	031)338-8855	양지면 주북리 141-4
	우주	손정희	1987.7.16	031)338-8860	
3	향림재활원	조문화	1986	031)762-8585	실촌면 연곡리 산2
	향림원	김문동	1953	031)764-8585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수봉재활원	김동국	1991.9.30	031)293-4298	권선구 탑동 516-1
	자 행 회	박하순	1966.1.15	031)292-8701	
2	부천혜림원	임성현	1976.10.16	032)666-7990	소사구 심곡본동 523-99
	백십자사	임성국	1957.1.14	032)612-6766	
3	동방재활원	김영관	1986.9.26	031)655-5382	소사동 106-1
	동방사회복지회	김득황	1977.3.18	031)653-5382	
4	홀트일산복지타운	최영대	1960.12.15	031)914-6631	일산구 탄현동 41-1
	홀트아동복지회	조기홍	1960.12.15	031)914-1222	
5	애덕의집	양영자	1991.10.23	031)962-4450	덕양구 486
	천주교센쉴수도원 유지재단	서미원	1991.10.23	031)964-1802	
6	신망애재활원	박춘화	1983.10.31	031)594-6644	수동면 입석리 522번지
	신망애재활원	김양원	1983.8.12	031)593-6688	
7	성심동원	김연순	1979.5.14	031)374-3423	기수동 90번지
	성심동원	김연순	1974.6.15	031)374-3422	
8	가없이 좋은곳	선제철	1978.10.6	031)958-7002	법원읍 금곡리 428-1
	주내자육원	임인명	1958.4.23	031)959-7007	
9	평화재활원	변현구	1999.6.12	031)884-0556	점동면 청안리 산29번지
	오순절평화의마을	오수영	1987.8.15	031)884-0535	
10	동산원	서정희	1982.	031)764-6892	광주읍 탄벌리 674-1
	한국발달장애복지 센터	서정희	1977	031)765-4531	
11	창인재활원	이경학	1999.3.4	031)772-4964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산 9
	창인원	이경학	1991.4.25	031)772-7734	

○ 청각·언어장애인지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에바다농아원		1970.12.1	031)668-5667	진위면 하북리 72
	에바다복지회	이성재	1963.9.13	031)668-0818	
2	성요셉의집	양선자	1991.10.22	031)653-3169	원곡면 내가천리 117
	서울포교성베네딕드수녀회	이숙자	1990.7.2	031)651-5331	
3	운보원	이태영	1993.10.19	031)531-2161	내촌면 마명리 120-8
	한국청각장애인지복지회 운보원	김 완	1960.5.17	031)531-2163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소망재활원	고부성	1984.4.12	031)741-3001	금광2동 3957
	양친사회복지회	김경모	1974.6.15	031)736-3010	
2	부천해림요양원	임성현	1991.3.13	032)666-7990	소사구 심곡본동 523-99
	백십자사	임성국	1957.1.14	032)612-6766	
3	홀트일산요양원	최영대	1999.1.1	031)914-6632	일산구 탄현동 41-1
	홀트아동복지회	조기홍	1999.1.1	031)914-1222	
4	신망애요양원	김양원	1989.2.2	031)594-6655	수동면입서리 522
	신망애복지재단	김양원	1983.8.12	031)593-6688	
5	요한의집	하현희	1994.5.16	031)339-0606	포곡면 삼계리 327
	천주교인보회	이행자	1990.7.16	031)339-0609	
6	해처림밥은곳	김원녀	1992.6.1	031)959-7008	법원읍 금곡리 428-1
	주내자육원	임인명	1958.4.23	031)959-7007	
7	혜성원	이창욱	1996.3.6	031)672-2284	양성면 장서리 336
	혜성원	이창욱	1994.12.12	031)674-8074	
8	요셉의집	김재신	1998.1.21	031)879-1065	백석면 연곡리 49-1
	예수교장로회 자선사업재단	윤이근	1971. 5. 6	031)879-0271	
9	여주천사들의집	한명옥	1998.3.27	031)884-0533	점동면 청안리 산29번지
	오순절평화의마을	오수영	1987.8.15	031)884-0535	
10	향림요양원	김문동	1993.12.27	031)763-2456	실촌면 연곡리 80-1
	향림원	김문동	1956.12.12	031)764-8585	
11	노아의집	김창언	1997.12.26	031)534-3884	신북면 갈월리 441
	김옥이재단	김창언	1961.2.13	031)536-2129	
12	가평꽃동네	김연자	1993.3.21	031)589-0180	하면 하판리 134-14
	청주교구	장봉훈	1995.3.27	031)589-0182	
13	창인요양원	이경학	1992.11.20	031)772-4964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산 9
	창인원	이경학	1991.4.25	031)772-7734	
14	엘리엘동산	권대관	2000.1.1	031)631-6644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584-1
	일이엘동산	신화석	1999.11.5	031)594-7755	

< 강 원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강원재활원	홍기종	1984.4.20	033)242-1602	신북읍 산천리 345-4
	남강애육원	홍우열	1967.6.3	033)241-3201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밀알재활원	박기원	1995.1.25	033)261-3112	신동면 혈동리 116-1
	천주교춘천교구 사회복지회	장 익	1993.12.15	033)261-3114	
2	천사들의집	최기식	1990.1.8	033)731-1004	봉산동 753-1
	원주가톨릭	김지석	1987.12.14	033)731-1005	
2	요셉재활원	백학현	1999.1.18	033)731-7857	호저면 광격리 628-2
	원주가톨릭사회 복지회	김지석	1988.6.24	033)731-7859	
3	애향원	박진철	1996.8.12	033)462-8594	기린면 북2리 431번지
	애향원	김경식	1994.10.10	033)462-8595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중중요양원	최기식	1990.12.20	033)731-1004	봉산동 753-1
	원주가톨릭	김지석	1987.12.14	033)731-1005	
2	늘사랑의집	신순자	1998.1.23	033)644-5000	강동면 심곡리 3-1
	성지복지재단	이무승	1987.2.19	033)644-5002	
3	양양복지원	함영길	1992.6.1	033)671-6820	양양군 서면 논화리 183-1
	성지복지재단	이무승	1987.2.19	033)671-6822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계명복지원	박승명	2000.2.17	033)253-3012	우두동 410-25
	계명복지원	박승명	1999.4.3	033)256-3549	

< 총 복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승덕재활원	안수일	81. 6.22	043)847-9405	봉방동 404
	승 덕 원	길동수	80. 2.29	043)855-5992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요셉의집	이원희	79.12.31	043)262-7415	신봉동 146-7
	충북재활원	강홍조	79.12.31	043)262-7411	
2	세하의집	박경희	87. 7.22	043)643-5472	흑석동 45-1
	금장학원	신상숙	85.10.31	043)643-0695	
3	살레시오 집	배은하	98.1.1	043)653-7523	봉양면 구학리 541-1
	원주가톨릭	김지석	88. 6. 7	043)651-3457	
4	청 산 원	최덕윤	74. 4. 8	043)733-3456	옥천읍 삼청리 산47-2
	영생재단	최석윤	73.10.23	043)731-8260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충북광화원	조재명	58. 7. 3.	043)253-7761	상당구 탑동 185-2
	충북광화원	정광윤	57. 8. 9.	043)253-7595	
2	성심맹아원	박관희	75.11. 1	043)843-1432	호암동산42-8
	청주교구청	장봉훈	61. 3.31	043)851-2174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성심농아원	권영희	71. 3.27.	043)851-1336	교현2동 640-2
	청주교구청	장봉훈	61. 3.31	043)847-7434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소 망 원	조재명	92. 4. 6.	043)253-7761	상당구 탑동 185-2
	소 망 원	정광윤	92. 4. 6.	043)253-7595	
2	마리아의집	이원희	90. 3.26	043)262-7416	신봉동 146-7
	충북재활원	강홍조	79.12.31	043)262-7411	
3	나눔의집	박만원	85. 1. 1.	043)843-9912	호암동 751-8
	송 덕 원	길동수	50. 4. 27.	043)843-9911	
4	이하의집	박경희	95.10.27	043)643-5472	흑석동 45-1
	금장학원	신상숙	85.10.31	043)643-0695	
5	성보나의집	이애경	90.7.27	043)254-5149	가덕면 내암리 2-4
	성가수녀회	김정옥	'81.6.10.	043)254-3156	
6	꽃동네장애인요양원	장영숙	90. 5. 5.	043)879-0122	음성읍 동음리 127-20
	청주교구청	장봉훈	61. 3.31	043)877-7742	

< 총 남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천안죽전원	심홍식	1994.7.2	041)555-5444	구성동 107-8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1991.7.29	041)555-5441	
2	서림복지원	임석노	1987.8.13	041)663-6423	음암면 울목리 산 22
	서림복지원	임석노	1984.12.4	041)663-8684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명주원	이원재	1982.6.19	041)857-7296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268
	명주원	이선자	1961.3.21	041)857-7120	
2	충남정심원	박현숙	1967.10.5	041)933-1717	주교면 관창리 산14
	모령학사	권호선	1954.12.15	041)933-8838	
3	성모복지원	안숙영	1996.9.20	041)543-7861	영인면 성내리 49-2
	성모복지원	이재청	1995.2.28	041)543-7862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동곡요양원	박옥분	1983.12.23	041)857-7121	반포면 송곡리 188-7
	명주원	이선자	1961.3.21	041)857-7121	
2	정심요양원	박현숙	1990.2.1	041)933-1717	주교면 관창리 산14
	보령학사	권호선	1954.12.5	041)933-8838	
3	서림요양원	임태민	1990.8.3	041)663-7368	음암면 울목리 산 22
	서림복지원	임석노	1984.12.4	041)663-8684	
4	성모의마을	산내화자	1992.12.21	041)732-0889	상월면 대촌리 122-1
	성모의마을	경갑룡	1995.6.9	041)733-0587	
5	양지요양원	여운승	1995.11.28	041)862-7002	전동면 송성리 650-2
	천성원	김병화	1972.12.11	041)862-7007	

< 전 북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 치 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 립 일	FAX번호	
1	동그라미재활원	배현정	1998.2.7	063)835-7300	석왕동 1-5
	중도원	서금성	1997.4.21	063)835-7350	
2	국제어린이재활원	김순옥	1952. 2. 1	063)263-4352	고산면 삼기리 산 15-6
	국제어린이재활원	김순옥	1959. 9. 2	063)263-4351	
3	영광의집	나난희	2000. 6. 12	063)545-1223	입석동 653-6
	기독교영광의집	김석규	2000. 5. 9	063)545-1225	
4	자애원	손정려	2000. 4. 17	063)536-1451	고부면 덕안리 9-15
	정읍자애원	곽영훈		063)536-1452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 치 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 립 일	FAX번호	
1	자립재활원	김재필	1980.12.20	063)223-1568	완산구 효자동 3가 478-6
	전주자립원	김 훈	1953.11.18	063)225-7660	
2	작은자매의집	문정현	1986.4.16	063)834-3555	익산시 월성동 181-1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이병호	1994.5.24	063)834-0441	
3	캐더린목양원	김소인	2000.1.27	063)466-6088	회현면 중석리 58-8
	구세군복지재단	이성덕	1977.1.28	063)466-6088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전북보성원	조순화	1965.6.12	063)835-1752	석암동 358-25
	전북보성원	권영조	1965.1.23	063)835-1753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영산원	김윤배	1967. 5. 6	063)835-2627	익산시 덕기동751-5
	영산원	송복순	1967. 2. 1	063)835-1920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자립요양원	심명숙	1987. 7. 1	063)223-1568	완산구 효자동3가 478-6
	전주자립원	김 훈	1953.11.18	063)225-7660	
2	영산의집	김윤배	1996. 1. 10	063)831-5949	익산시 덕기동 751-5
	영 산 원	송복순	1967. 2. 1	063)835-1920	
3	어린이새힘원	김순옥	1990. 10. 5	063)263-4911	고산면 삼거리 12
	국제어린이재활원	김순원	1959. 9. 2	063)263-4351	

<전 남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목포소망 장애복지원	정종록	1996.1.11	061)273-0780	목포시 대양동 797-14번지
	목포 소망원	한중석	1961.4.15	061)276-0606	
2	애양재활직업 보도소	유경운	1989.5.8.	061)752-4716	순천시 매곡동 167-1
	애 양 원	김익동	1974.3.1.	061)752-2734	
3	동백원	김영환	1988.1.11	061)683-0678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48
	송정회	김홍용	1963.9.9	061)685-3751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공생재활원	윤향미	1985.12.31	061)246-2036	목포시 달동 845-1
	공생복지재단	임동신	1928.10.15	061)246-4689	
2	성 산 원	나종학	1995.3.8	061)332-9968	나주시 삼영동 산 44
	계 산 원	김계운	1989.11.1	061)333-9967	
3	곡성삼강원	강인형	1984.12. 7	061)363-2346	곡성읍 죽동리 6
	곡성삼강원	강인형	1951.3.15	061)363-5088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광 명 원	하제룡	1953.08.27	061)462-7356	영암군 삼호면 산호리 442-3
	목포광명원	박준식	1957.09.20	061)462-7141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목포농아원	이정숙	1955. 5.10	061)462-6306	영암군 삼호면
	소 립	이영휴	1957. 8. 9	061)462-6944	난전리 5-1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목포장애인요양원	정영걸	1991. 8. 1	061)453-3726	무안군 청계면
	공생복지재단	임동신	1928.10.15	061)454-2454	월선리 73-2
2	나주계산요양원	나종학	1990.8.23	061)332-9967	나주시 삼영동
	계 산 원	김계윤	1989.11.1	061)333-9967	산 44
3	동백요양원	윤명숙	1990.3.21	061)684-2468	여주시 소리면
	송정회	김홍용	1963.9.9	061)685-3751	관기리 348

< 경 북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마리아의 집	김정숙	1984.10.24	054)272-0586	포항시 남구
	성모자애원	이정순	1984.5.15	054)282-7767	대잠동 270번지
2	안동재활원	김윤동	1986.11.24	054)841-5862	안동시 서후면
	안동재활원	김윤동	1979.1.12	054)841-6816	이송천리 77-2
3	국제재활원	김은화		054)954-4176	성산면 어곡리 9
	성요셉복지재단	이문희	1957.2.27	054)954-4946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선인재활원	박창숙	1998.7. 21	054)751-8895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93번지
	상 록 수	박선웅	1997.8.21	054)751-8854	
2	애명복지촌	배영호	1987.12.22	054)858-8871	북후면 도촌리 846-1
	애명복지촌	배연창	1986.7.2	054)858-8874	
3	팔레스	류상덕	1997.11.27	054)332-2841	북안면 도천리 412
	창과재단	고은애	1996.11.20	054)332-2845	
4	대동시온재활원	신명도	1982.1.15	053)853-3779	진량읍 양기리 산3
	대동시온재활원	장재원	1958.12.28	053)851-9878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안동요양원	김춘식	1990.7.1	054)841-5862	안동시 서후면 이 송천리 77-2번지
	안동재활원	김윤동	1979.1.12	054)841-6816	
2	애명요양원	김영환	1990.7.30	054)858-8871	북후면 도촌리 846-5
	애명복지촌	배연창	1986.7.2	054)858-8874	
3	성락원	강조자	1953.3.11	053)814-3226	신천동 산27-2
	성락원	백영기	1955.12.13	053)813-7981	
4	대동요양원	신명도	1993.4.15	053)853-3779	진량읍 양기리 산3
	대동시온재활원	장재원	1958.12.28	053)851-9878	
5	덕산요육원	김상조	1994.5.12	054)954-4176	성산면 어곡리 9
	성요셉복지재단	이문희	1957.2.27	054)954-4946	
6	사랑마을	박승탁	1997.11.1	054)653-6700	용궁면 무지리 255-2
	애명복지촌	배연창	1986.7.2	054)653-6116	
7	루도비꼬집	이정순	2000.2.25	053)813-2258	압량면 당리리 492
	성모자애원	이정순	1954.5.15	053)813-2258	

<경 남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홍익재활원	임중기	79. 3. 24	055)286-1117	신촌동 30
	선린복지재단	최행진	58. 6. 26	055)286-1119	
2	자생원	한삼주	51. 8.10	055)645-2511	정량동156
	자생원	한삼주	63.8.22	055)646-2031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진해재활원	박종갑	'59. 8.13	055)546-2622	태평동 16번지
	진해재활원	박종갑	'93. 11.3	055)546-2622	
2	천사의 집	김석좌	92.7. 7.	055)672-6608	마암면 신리 산 145-1
	범숙	김석좌	92.3.20	055)672-6607	
3	에 광 원	김임순	1955.9.21	055)681-7524	장승포동 521-4
	거제도애광원	심치선	1955.05.04.	055)682-1399	
4	소망의집	전석자	92.3.10	055)574-3633	가례면 개승리 143-1
	경남복지마을	서익수	58.2.24	055)574-7533	
5	치자마을	김정년	2000.6.23	055)632-1854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346
	내원	김정년	1998.4.6	055)632-8350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무궁애학원	이금자	82.8.30	055)382-9896	물금읍 범어리 산62-8
	무궁애학원	박재석	57.9. 7	055)387-6698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늘 푸 른 집	조태우	95.01.16	055)374-6126	상북면 내석리 102-1
	신 생 원	도말순	57.10.21	055)374-6123	
2	민들레집	김만순	86.10.16.	055)681-7524	장승포동 521-4
	거제도애광원	심치선	55.05.04.	055)682-1399	
3	성심인애원	임성일	95.6.21	055)973-6966	산청읍 내리100
	프란치스코회	김찬선	59.6.19	055)973-6967	

< 제 주 >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아가의집	강종숙	'88.2.2	064)783-9000	조천읍 함덕리20-2
	혜정원	김희숙	'88.2.2	064)783-9255	

